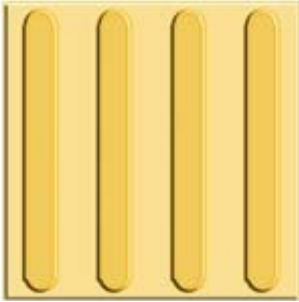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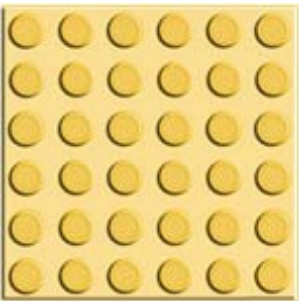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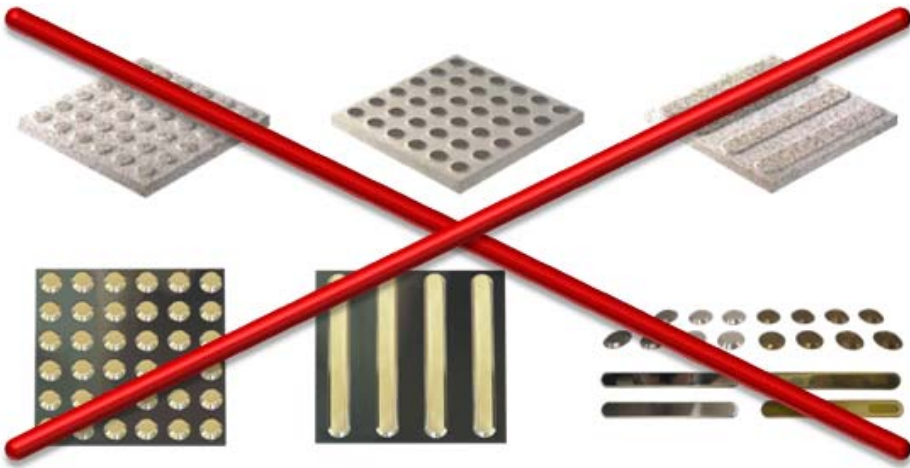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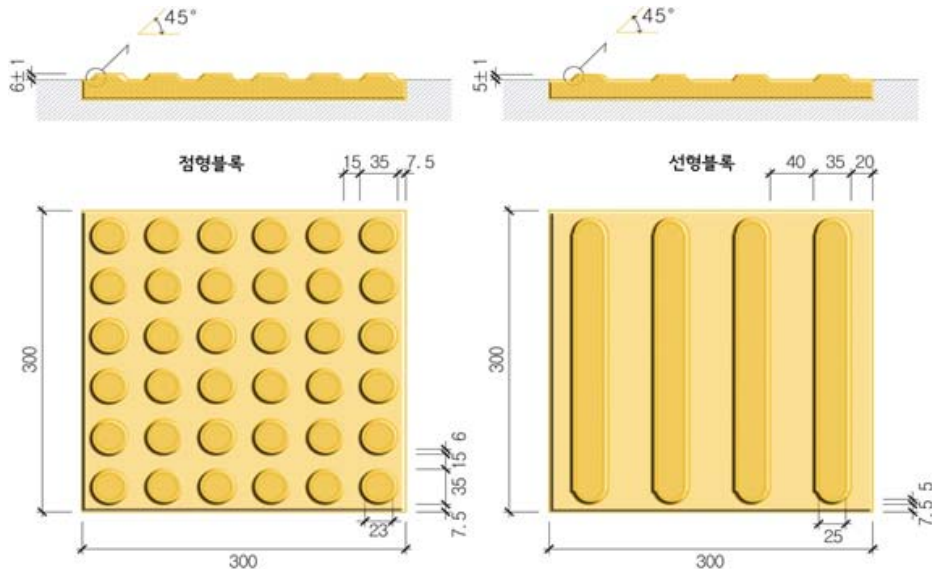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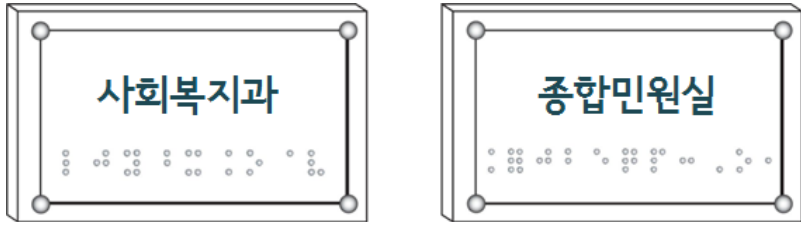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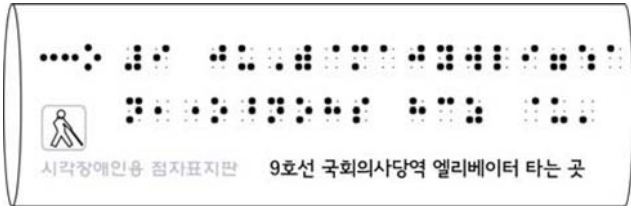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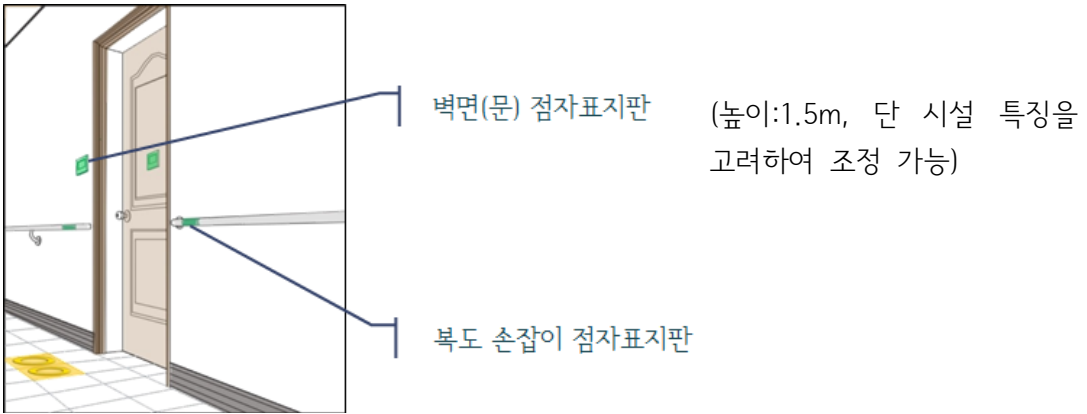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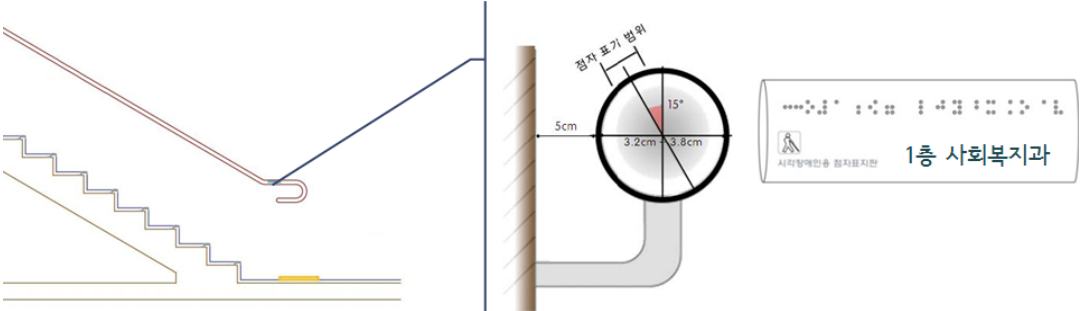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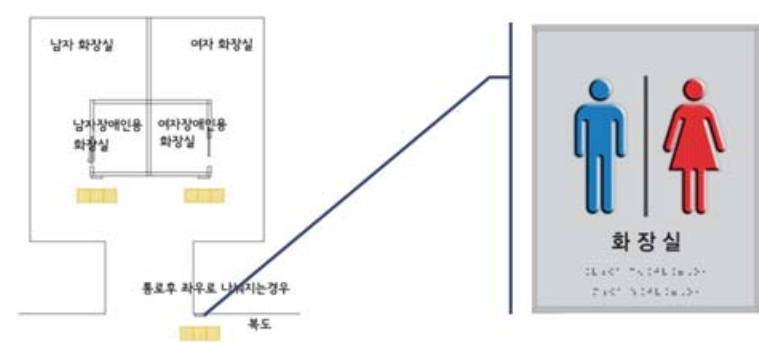
1.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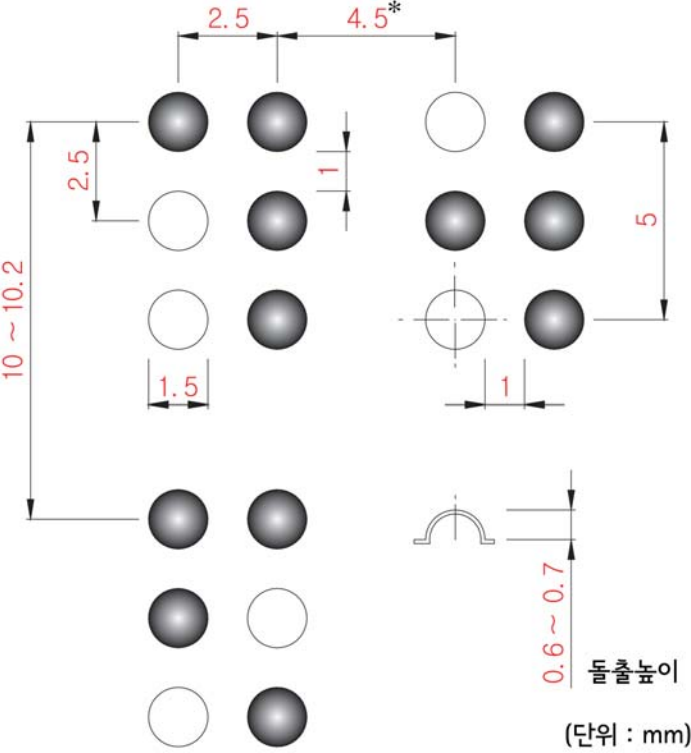
1. 점자블록

종류	선형블록	 목적 방향까지 안전하게 유도 4개의 직선으로 구성
	점형블록	 목적지 전면, 굴절지점, 계단 등 내부시설의 시작과 끝 부분, 장애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6개의 점형으로 구성
재질	올바른 재질	 석재, 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 30cm * 30cm 크기의 일체형
	금지된 재질	 철재, 미끄럼을 유발하는 재질 등은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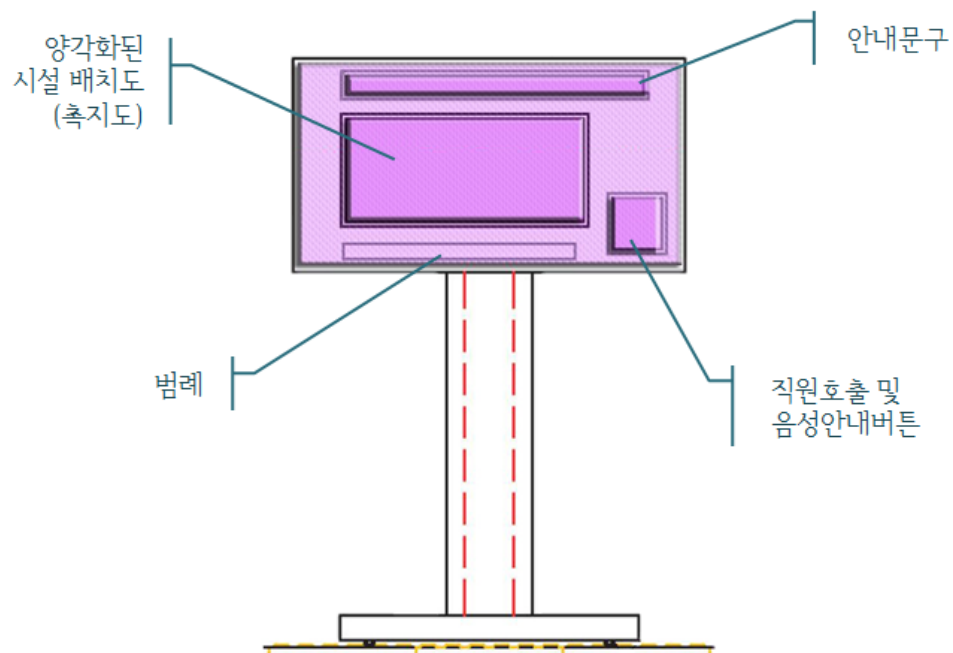
규격		 기술표준원 표준번호 KS F 4561
설치 위치	주출입구	 주출입구 폭만큼 30cm 이격 설치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조작반 전면 30cm 이격 설치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앞 진입부 폭만큼 설치
	계단	 계단 폭만큼 30cm 이격 설치

2. 점자표지판

기능		점자표지판은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또는 사무실 출입문 벽면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층정보와 목적지 정보, 진행방향 및 사무실명 등의 정보를 점자로 제공	
종류	벽면형		
	손잡이형		
설치 위치	문		
	계단 손잡이		
	화장실		

	점자 규격	 (단위 : mm) * 단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등 과 같이 표기내용이 많을 경우 최소 3mm까지 완화 가능.																																				
내용	문구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구 분</th><th>점자 표기 문구</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공공 건물</td><td>계단(하부)</td><td>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td></tr> <tr> <td>계단(상부)</td><td>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td></tr> <tr> <td>복도 핸드레일</td><td>○○○(주요시설 등)</td></tr> <tr> <td>경사로(하부)</td><td>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또는 화살표 ○○구청 본관 주출입구</td></tr> <tr> <td>경사로(상부)</td><td>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또는 좌측 본관 방면, 우측 별관 방면</td></tr> <tr> <td rowspan="4">보도</td><td>육교 손잡이(하부)</td><td>화살표 ○○육교 □□방면 가는 곳</td></tr> <tr> <td>육교 손잡이(상부)</td><td>화살표 □□방면 가는 곳</td></tr> <tr> <td>지하도 손잡이(지상)</td><td>화살표 ○○지하도 □번출구</td></tr> <tr> <td>지하도 손잡이(지하)</td><td>화살표 ○번출구 □□□, △△△방면</td></tr> <tr> <td rowspan="6">지하 철</td><td>나가는 출입구 손잡이</td><td>화살표 ○번출구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일)방면</td></tr> <tr> <td>들어가는 출입구 손잡이</td><td>화살표 ○호선 ○○역 ○번출구</td></tr> <tr> <td>승강장에서 대합실 가는 손잡이</td><td>화살표 지하(지상)○층 대합실 나가는 곳(가는 곳)</td></tr> <tr> <td>승강장 가는 손잡이 (상대식)</td><td>화살표 ○○,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 일) 방면 타는 곳</td></tr> <tr> <td>승강장 가는 손잡이 (섬식)</td><td>화살표 좌측 ○○방면 우측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 판 문구와 동일) 방면 타는 곳</td></tr> <tr> <td>환승통로</td><td>화살표 ○호선 ○○(역사 내 사인물) 방면 갈아타는 곳</td></tr> </tbody> </table>		구 분	점자 표기 문구	공공 건물	계단(하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계단(상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복도 핸드레일	○○○(주요시설 등)	경사로(하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또는 화살표 ○○구청 본관 주출입구	경사로(상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또는 좌측 본관 방면, 우측 별관 방면	보도	육교 손잡이(하부)	화살표 ○○육교 □□방면 가는 곳	육교 손잡이(상부)	화살표 □□방면 가는 곳	지하도 손잡이(지상)	화살표 ○○지하도 □번출구	지하도 손잡이(지하)	화살표 ○번출구 □□□, △△△방면	지하 철	나가는 출입구 손잡이	화살표 ○번출구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일)방면	들어가는 출입구 손잡이	화살표 ○호선 ○○역 ○번출구	승강장에서 대합실 가는 손잡이	화살표 지하(지상)○층 대합실 나가는 곳(가는 곳)	승강장 가는 손잡이 (상대식)	화살표 ○○,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 일) 방면 타는 곳	승강장 가는 손잡이 (섬식)	화살표 좌측 ○○방면 우측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 판 문구와 동일) 방면 타는 곳	환승통로	화살표 ○호선 ○○(역사 내 사인물) 방면 갈아타는 곳
	구 분	점자 표기 문구																																				
공공 건물	계단(하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계단(상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복도 핸드레일	○○○(주요시설 등)																																				
	경사로(하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또는 화살표 ○○구청 본관 주출입구																																				
	경사로(상부)	화살표 ○층 ○○○, □□□(주요시설 등) 또는 좌측 본관 방면, 우측 별관 방면																																				
보도	육교 손잡이(하부)	화살표 ○○육교 □□방면 가는 곳																																				
	육교 손잡이(상부)	화살표 □□방면 가는 곳																																				
	지하도 손잡이(지상)	화살표 ○○지하도 □번출구																																				
	지하도 손잡이(지하)	화살표 ○번출구 □□□, △△△방면																																				
지하 철	나가는 출입구 손잡이	화살표 ○번출구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일)방면																																				
	들어가는 출입구 손잡이	화살표 ○호선 ○○역 ○번출구																																				
	승강장에서 대합실 가는 손잡이	화살표 지하(지상)○층 대합실 나가는 곳(가는 곳)																																				
	승강장 가는 손잡이 (상대식)	화살표 ○○,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문구와 동 일) 방면 타는 곳																																				
	승강장 가는 손잡이 (섬식)	화살표 좌측 ○○방면 우측 ○○(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 판 문구와 동일) 방면 타는 곳																																				
	환승통로	화살표 ○호선 ○○(역사 내 사인물) 방면 갈아타는 곳																																				

3. 점자안내판

기능	점자안내판은 주요시설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
구성	구성은 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표준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에 준하여 제작 ※ 단체표준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는 http://www.kbufac.or.kr/DataTech 에서 참조.
내용	

4. 음성유도기

기능	음성유도기는 대중을 위한 여객시설과 공공건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시설의 위치 및 대략적인 실내 배치 정보를 제공
내용	 [멘트]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입구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우측에 계단이 있습니다.

5. 음향신호기

기능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지주에 설치하여 신호등의 변화를 음성, 음향,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신호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내용	 [적색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OO교차로 OO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녹색불] (딩동댕) OO방향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바탕음] 귀뚜라미 소리, 새 소리 [점멸등]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오니 다음 신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II. 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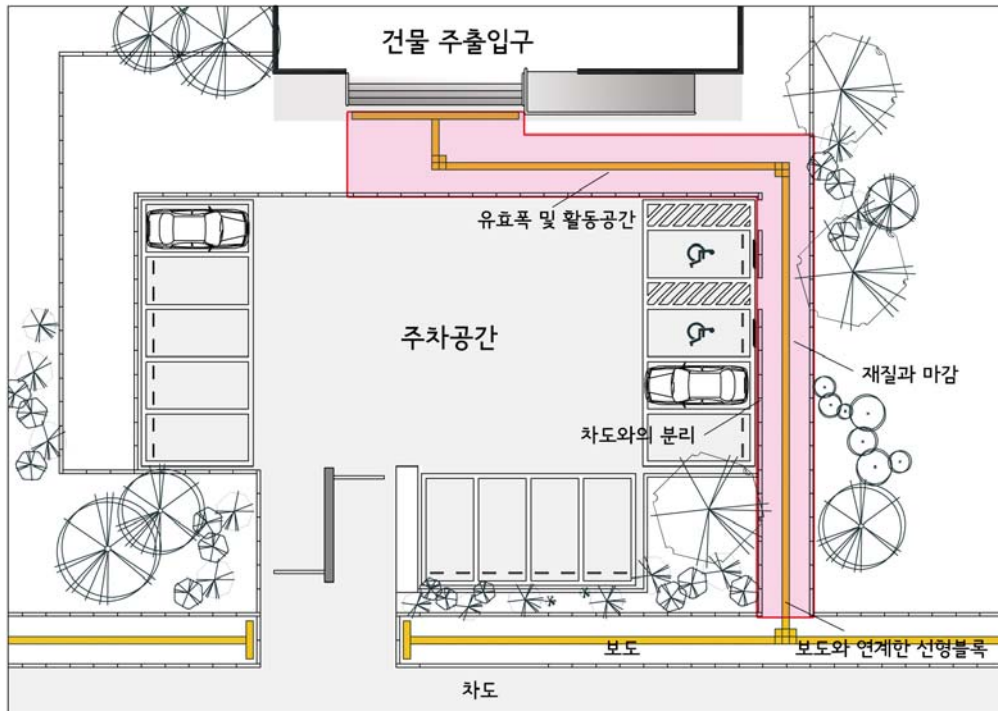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이진원 팀장

※ 시설 인근

	
<이룸센터> - 지하철역~접근로 점자블록 연계 설치 X ▶ 인근 교통시설에서부터 선형블록으로 유도해야함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인도가 중간에 끊겨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겨있음
	
<용산구청> - 인근 보도와 구청 접근로에 점자블록 연계설치 되어있으나 인근 지하철역까지 연결되어있지 않음 ▶ 인근 교통시설에서부터 선형블록으로 유도해야함	<송파구청> - 인근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 연계설치되어 있었으나 추후에 생긴 자전거전용도로로 인해 연결 끊어짐 ▶ 끊어진 부분에 점형블록으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야 함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그림 2-1> 접근로 사례

가.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바. 점자블록

-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 접근로에는 점자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로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1. 접근로 (주) 구조 및 접근성 여부에 따라 부출입구로 유도가 능	대상시설 외부에서 주출입구 교통약자 고려(유효폭1.2m, 기울기1/12, 평탄 미끄럽지 않은 재질, 마감)(가-1, 라-1)							
	접근로 기울기는 1/18, 1/12(4.8°)까지 허용(나-1)							
	대지 내 단차가 있을 경우 2cm 이하 (나-2)							
	보차 구분을 위한 경계구분(연석, 울타리, 공작물 등)(다-1)	연석	울타리	공작물				
	연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높이 6cm~15cm 접근로 색상과 구별되는 색상 권장(다-2)							
	덮개에 격자, 틈새가 있을 경우 2cm 이하 간격(라-3)							
	보행 장애물 제거(가로등 전주 간판 등 제거), 가로수 2.1m미터까지 가지치기(마-2)							
	접근로 점자블록 설치(바-1)	설치 여부	완전 설치	재질 규격	이격 거리	진행 및 설치 위치	유지 관리	바닥 재질 달리한 경우

접근로 사례



<이룸센터>

- 접근로~주출입구 점자블록 설치되어있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접근로~주출입구 점자블록 설치되어있음



<용산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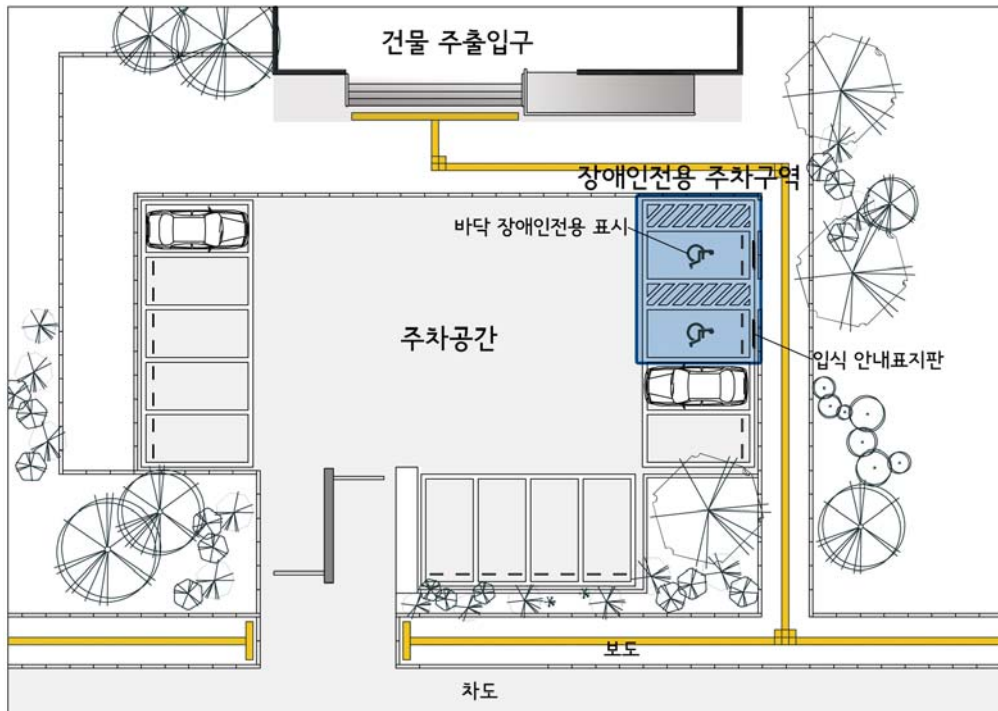
- 접근로~주출입구 점자블록 설치되어있음



<송파구청>

- 접근로~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 설치 X
 - ▶ 접근로~주출입구 점자블록 설치하여야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림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례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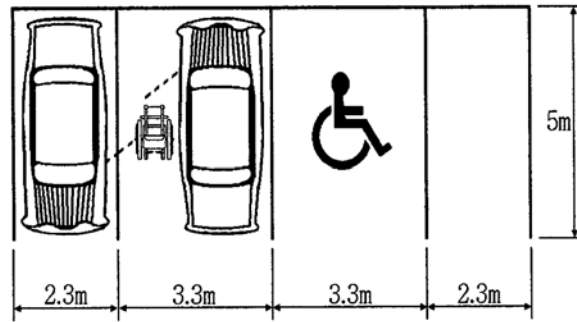
-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 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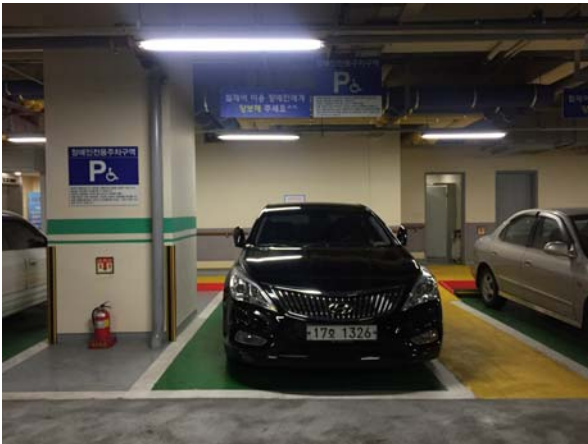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〇〇〇 - 〇〇〇〇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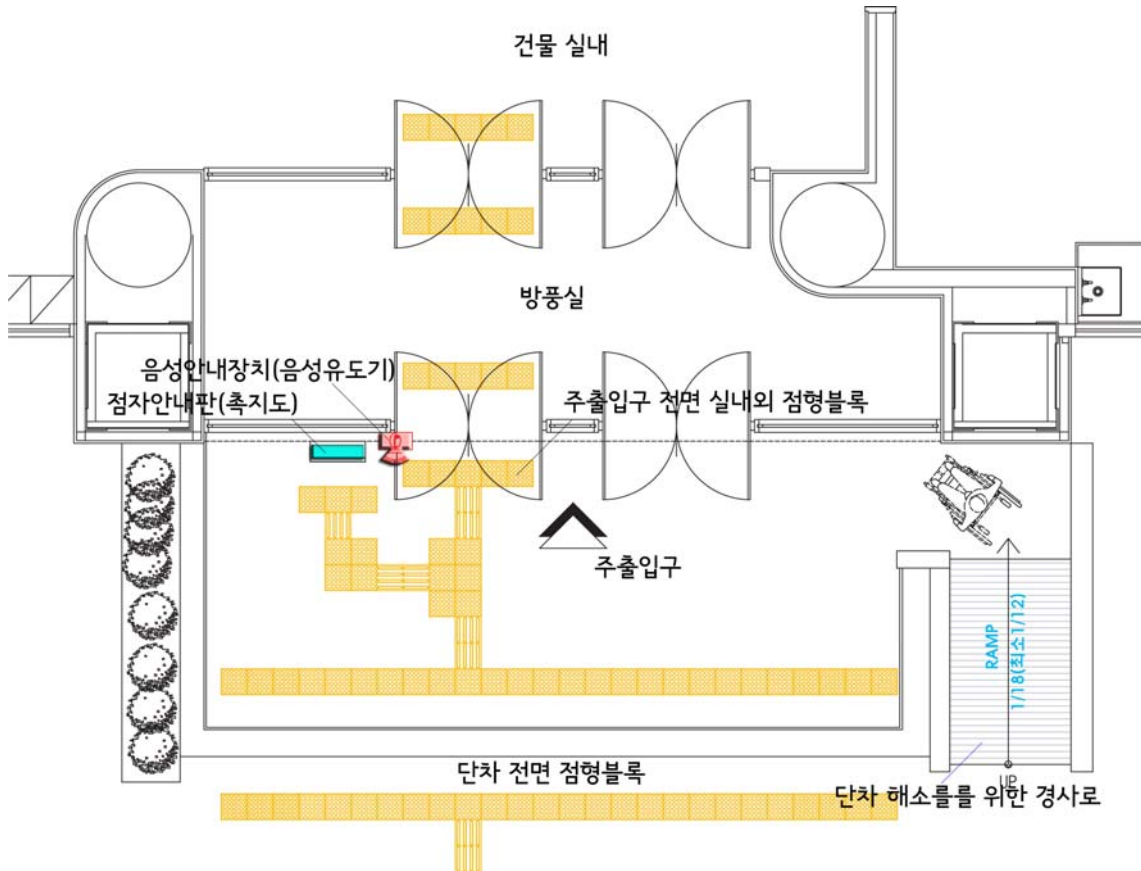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접한 설치 장소 및 용이한 접근성, 유효폭 1.2m 이상(가-1,2)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이상)(나-1,2)					
	경사 없고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바닥마감(나-3)					
	바닥표지 여부, 주차구역선 또 바닥면 색상 달리 함(다-1)					
	부설 - 2~4% 노상 - 20대당 1개 이상 노외 - 50대 이상 1개 이상 단,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바닥면 장애인 전용표시	안내표지 여부	안내표지규격	기재내용	
	안내표지 가로0.7m, 세로0.6m)높이1.5m'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위반 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 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다-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례

	
<이룸센터> - 설치 장소 및 주차장 규격, 바닥마감 및 안내표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설치 장소 및 주차장 규격, 바닥마감 및 안내표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음
	
<용산구청> - 설치 장소 및 주차장 규격, 바닥마감은 적절하지만 안내표지의 설치 높이 미흡 ▶ 지면에서 표지판 밑면까지의 높이는 1.5m로 하여야 함	<송파구청> - 설치 장소 및 주차장 규격, 바닥마감 및 안내표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음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주출입구)



<그림 2-13> 주출입구 사례

가. 턱 낮추기

-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울기, 재질과 마감, 손잡이 등)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4.76°)로 하여야 한다. (1/8 완화 조항 생략)
- (5)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6)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7)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8) 수평손잡이 부근에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하며 조사항목은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이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시설명, 나가는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 (9)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주출입구 전면 30cm에 문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쌍여닫이문에 한하여 문이 한 개소 밖에 없을 경우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문 폭의 반만 설치 가능하다. 방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풍실의 깊이가 3m이상일 경우 방풍실 내에도 설치하며 3m 미만일 경우 생략가능하다.

라.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의 시종점 전면 30cm에 단차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마. 점자안내판은 주출입구 부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1개 설치되어야 하며 점자블록을 유도 설치해야 한다. 단 장소가 협소하여 선형블록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점자안내판 전면 0.3m에 점형블록만 설치 가능하다.

바. 점자안내판은 스탠드식의 경우 중심선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0~1.2m가 되도록 하며 벽면설치식의 경우 중심선의 높이를 1.0~1.5m의 범위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점자의 표기방식은 부식형이 아닌 반구형으로 표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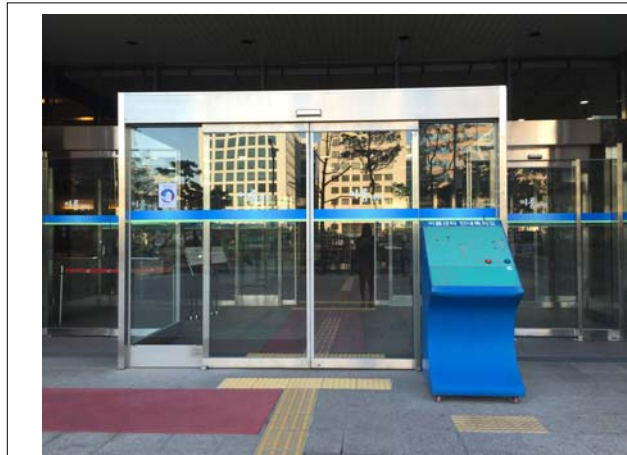
사. 점자안내판 내용구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위치와 실제 건물 배치 방위와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각 실명은 해당구역에 표기되도록 해야 한다.(범례로 표기하는 것은 피해야 함)

아. 음성유도기는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하며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료한 음성으로 해당 시설의 시설명 및 대략적인 로비 배치를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멘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전원으로 항상 동작해야 한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주출입구)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x),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5, 6, 17. 주출입구 부근 및 실내 출입문	주출입구와 통로 높이차이 2cm 이하(5.가-1)							
	출입구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 출입문 옆 0.6m 확보(자동문 제외)(6.가-1,2)							
	회전문을 제외한 형태의 문(6.나-1)							
	미달이문 가벼운 재질, 여달이문 도어체크설치 3초 여유(6.나-2,3)							
	자동문의 넓은 감지 범위와 충분한 개방시간 확보(6.나-4)							
	출입문 손잡이 높이는 0.8~0.9m, 레버형(수직, 수평형)(6.다-1)							
	주출입구 전면 0.3m에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바닥재질감 달리가능(6.라-1)	설치여부	완전설치	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	유지관리	바닥 재질 달리한 경우
	자동문 부근 호출벨 설치 권장(6.라-2)							
	일반안내도를 설치한 경우 점자표지설치, 설치 높이 1.0~1.2(벽면의 경우 1.0~1.5m가능), 현위치, 실제방위 준수, 구형점자표기, 각실명 해당위치 표기(17.가-1.2.3)	설치여부	설치규격	점자표기 방식	내용구성	유지관리		
	점자안내판 부근 점자블록 유도 설치(협소한 부분 점형만 설치가능)	설치여부	완전설치	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	유지관리	시공방법 기술 -
12. 경사로	주출입구 음성유도기(음성안내장치) 설치, 명료한 음성, 올바른 멘트 구성, 상시 동작 권장 (설치해야 할 개수)(17.나.다) 음성안내장치 및 기타 유도신호장치	미설치	설치위치	안내멘트	음질상태	동작여부		
	경사로 한 개소 이상 설치	설치여부	유효폭		기울기	평탄마감		
	유효폭 1.2m이상(0.9m 완화가능), 시종점, 굴절부분 1.5×1.5m, 높이 0.75m 마다 참설치(가-1.2,3)							
	1/12이하의 기울기(4.76°)(나.1.2), 경사로길이 1.8m 이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손잡이 필요(다.1), 손잡이 설치높이 0.85cm정도, 지름 3.5cm 정도, 수평손잡이(0.3m 이상) 설치 등 손잡이규격(다.1.2.3),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손잡이설치여부	완전설치	손잡이규격	차양설치	점자표지판설치여부		
	점자 표지판 설치(설치해야할 개수)	미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재질 기술- 시공방법 기술 -
	경사로 손잡이 수평손잡이 부근 설치 요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설치 가능(라-2)							
	지붕, 차양 등 캐노피(canopy) 설치 가능(마)							

주출입구 사례



<이룸센터>

- 주출입구 전면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및 점자블록 설치, 음성유도기 설치 적절하게 되어있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주출입구 전면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및 점자블록 설치, 음성유도기 설치 적절하게 되어있음



<용산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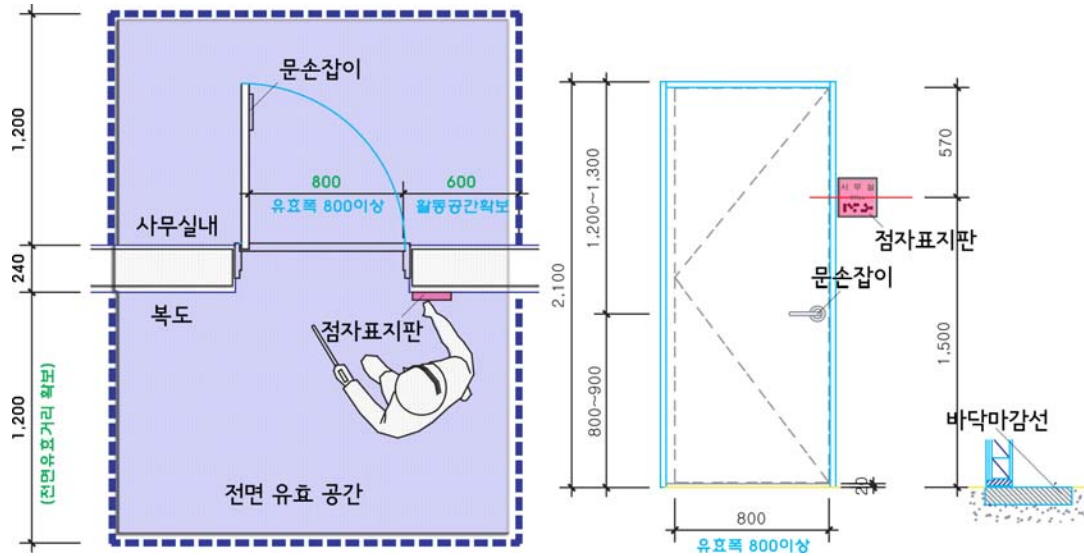
- 주출입구 전면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및 점자블록 설치 적절하게 되어있음



<송파구청>

- 주출입구 전면 점자블록은 적절하게 설치되어있으나 점자안내판은 설치되어있지 않음
 - ▶ 점자안내판은 주출입구 부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1개 설치되어야 하며 점자블록을 유도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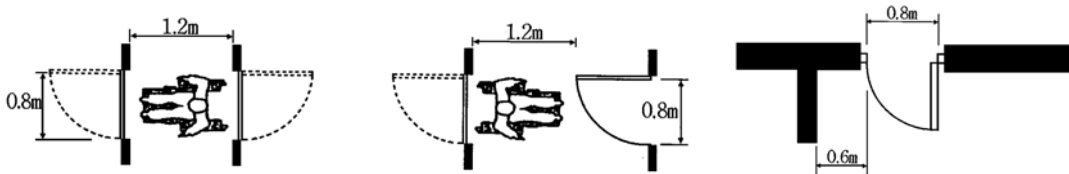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그림 2-19> 실내 출입문 사례

가. 유효 폭 및 활동 공간

-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 유효 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의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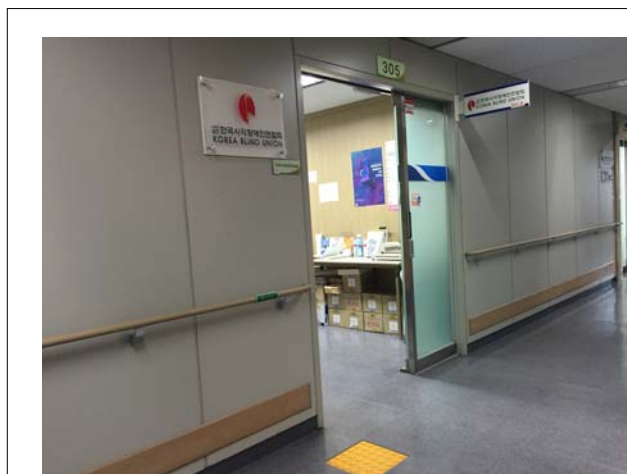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쪽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향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출입구(문)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한 진입 폭과 활동 공간(유효폭 0.8m 이상, 1.2m 이상의 전면 활동 공간, 문손잡이 쪽 0.6m 이상의 공간)과 높이차이 제거(문턱, 몰딩 등)(6-가.1.2.3)					
	합당한 문의 형태(회전문 배제, 도어체크 및 자동문감지 거리 등)(나-1)					
	문손잡이 높이 0.8~0.9m로 레버, 막대형(다-1)					
	점자 표지판 설치(설치해야할 개수) 문손잡이 쪽 벽면에 1.5m 높이에 설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방이름 표기 (다-2)	미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재질 기술- 시공방법 기술 -

※ 조사대상은 실제 내방, 민원처리 가능한 사무실만 조사하도록 함(구청장실, 직원휴게실, 외부인 출입금지 등 공간은 배제하고 조사하도록 함), 총별 조사표를 작성 후 취합 작성하도록 함.

출입문 사례



<이룸센터>

- 사무실 출입문 쪽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5m 정도에 점자표지판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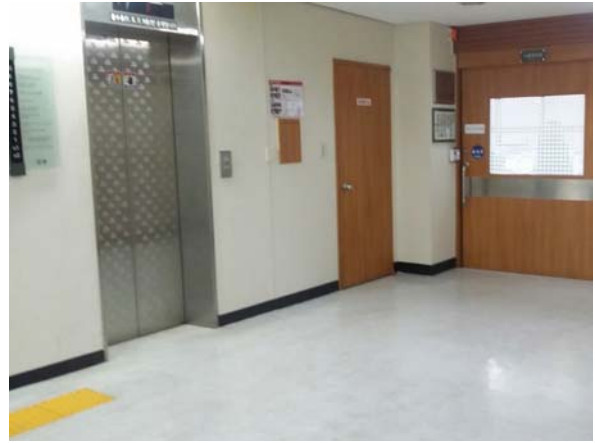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사무실 출입문 쪽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5m 정도에 점자표지판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음



<용산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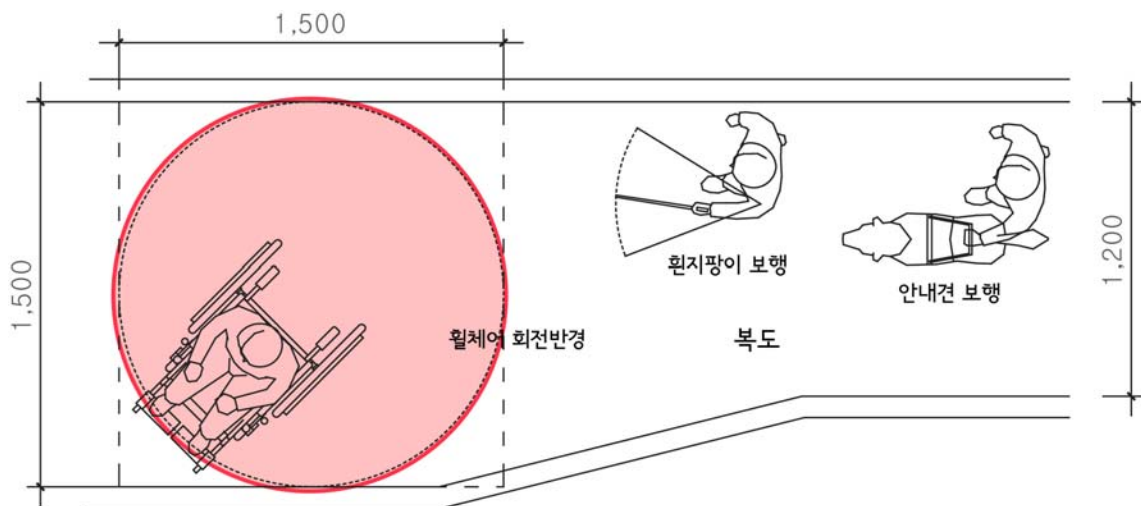
- 사무실 출입문 쪽 벽면에 점자표지판 미설치
 -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쪽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송파구청>

- 사무실 출입문 쪽 벽면에 점자표지판 미설치
 -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쪽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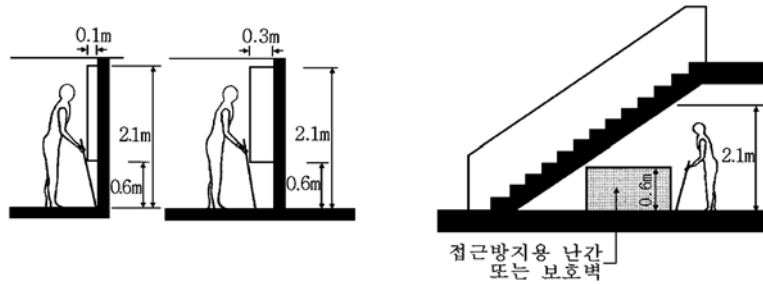


<그림 2-23> 복도 및 통로 사례

가. 유효 폭

- (1) 복도의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마. 안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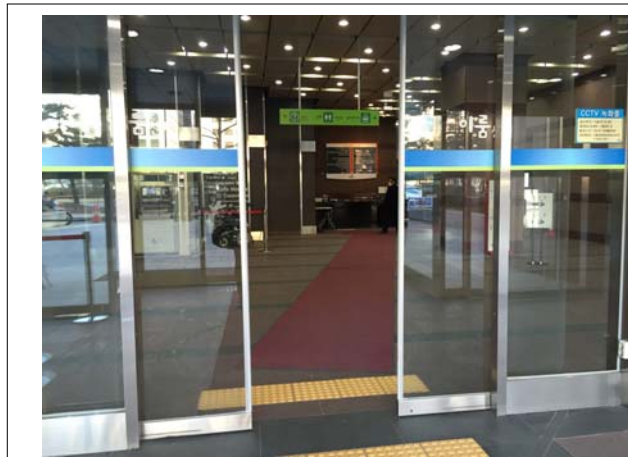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 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복도 및 통로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1.2m 이상의 유효폭,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7.가-1)						
	높이차이 없어야 함,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평탄 마감처리(나-1,2)						
	장애인전용시설 통로 측면 손잡이 설치 의무, 설치높이 0.85cm정도(이중의 경우 0.85, 0.65), 지름3.5cm 정도 등 손잡이 규격,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다-1.2.3.4)	손잡이설치여부	완전설치	연속설치	손잡이규격	점자표지판설치여부	
	점자 표지판 손잡이 시종점 부근, 목적지 부근에 설치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설치해야할 개수)(다-5)	미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시공방법	기술 -
	보행 장애물 제거, 벽면의 0.6~2.1m 이내 돌출폭 0.1m이하, 기둥 돌출폭 0.3m 이하. (라-1.2)						자세한 장소 기술
	통로상부 바닥면에서 2.1m 이상 유효높이 확보, 장애물이 있는 경우 0.6m 이하 보호벽, 접근 방지용 난간 설치(라-3)						
	킥플레이트 설치 권장(0.15~0.35m높이)(마-1)						
	복도의 모서리 부분 및 둥글게 마감 시공 권장(마-2)						

※ 출입문, 방화셔터나 소화전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손잡이는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점자표지판의 개수 파악은 손잡이의 시종점 부근을 파악하여 셈하도록 함

복도 및 로비 사례



<이룸센터>

- 주출입구~안내데스크에 재질이 다른 마감-카펫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시설로 실내 복도에는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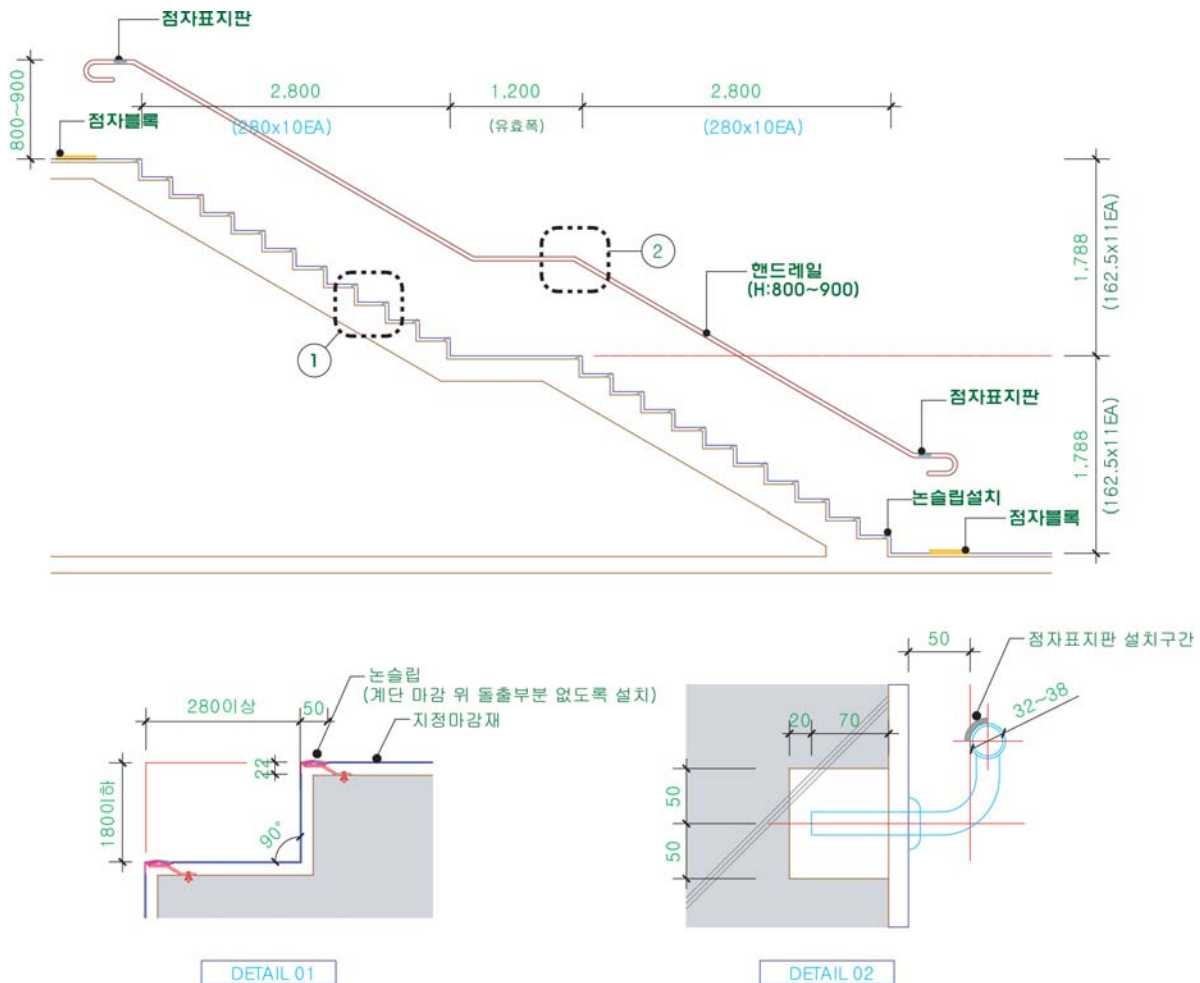
- 장애인전용 시설로 실내 복도에는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용산구청>

- 주출입구~안내데스크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카펫으로 덮여있음
- ▶ 점자블록이 장애물로 덮여있으면 즉시 치워야 함

6.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계단



<그림 2-28> 계단 점자표지판, 논슬립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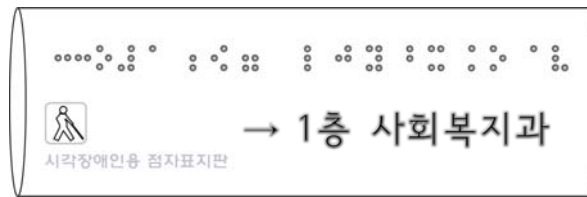
가. 계단의 형태 및 유효 폭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를 권장하며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계단에는 철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계단부에서는 디딤판의 너비와 철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

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5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목적지 방향,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할 수 있다.

마. 계단 상하부 점자블록

- (1)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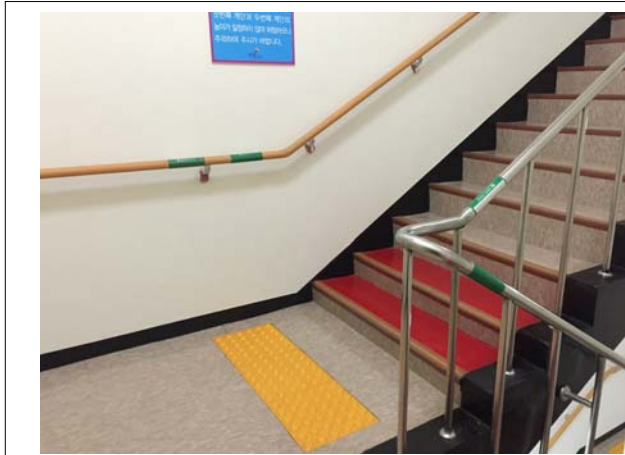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 턱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8. 장애인 통가계단 (총)	직선, 꺾임 형태 권장(가-1) 유효폭 1.2m 이상, (나)						
	철타면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타면의 높이는 0.18m 이하(균일한 철타면과 디딤판)(다-1.2.3)						
	손잡이 설치(계단난간과 구별) (연속설치, 0.8~0.9m 높이, 2층의 경우 0.85m내외 0.65m내외, 3.2cm~3.8cm 지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라-1.2)	손잡이설치여부	완전설치	연속설치	손잡이규격	점자표지판설치여부	계단부가 나뉘거나 분리된 경우 따로 조사하도록 함
	손잡이 점자 표지판 설치(설치해야할 개수) 손잡이 양끝부분(수평손잡이부근)에 설치, 목적지층정보 내용표기(라-3)	미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재질 및 시공방법 기술 -
	계단 바닥 미끄럽지 아니한 평탄 마감(마-1)						
	계단코 노출립 설치 의무(단 전체 미끄럼방지인 경우 생략가능)(마-2)						
	점자블록 설치(설치해야할 개수) 계단시종점 0.3m 전면에서 계단 폭만큼 설치(마-3)	미설치	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	유지관리	시공방법 기술 -
	추락방지를 위한 계단 측면 턱 2cm 이상 설치(바-1)						
	계단코 색상 대비권장(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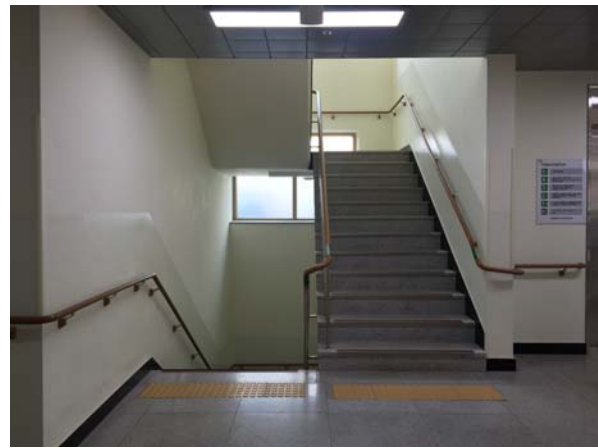
※ 조사 층은 실제 내방, 민원처리 가능한 층만 조사하도록 함(구청장실, 직원휴게실, 외부인 출입금지 등 공간은 배제하고 조사하도록 함), 층별 조사표를 작성 후 취합 작성하도록 함.

계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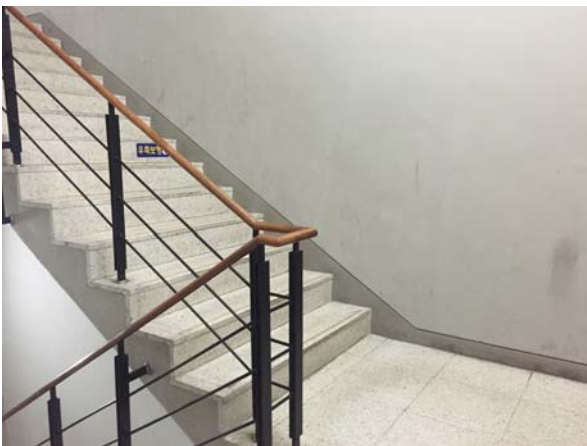
<이름센터>

- 알맞은 규격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 전면 30cm 위치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알맞은 규격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 전면 30cm 위치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음



<용산구청>

- 손잡이는 한쪽만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표지판 및 점자블록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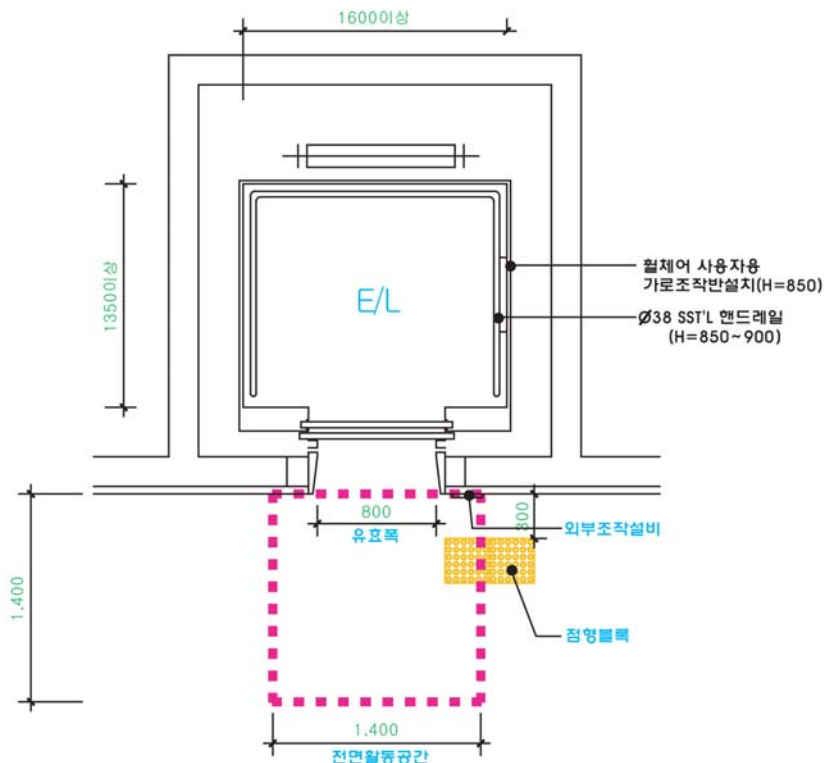
▶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목적지 방향,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30c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송파구청>

- 알맞은 규격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 전면 30cm 위치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음

7.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승강기(엘리베이터)



<그림 2-33> 엘리베이터 사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크기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 통과 유효 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승강기 조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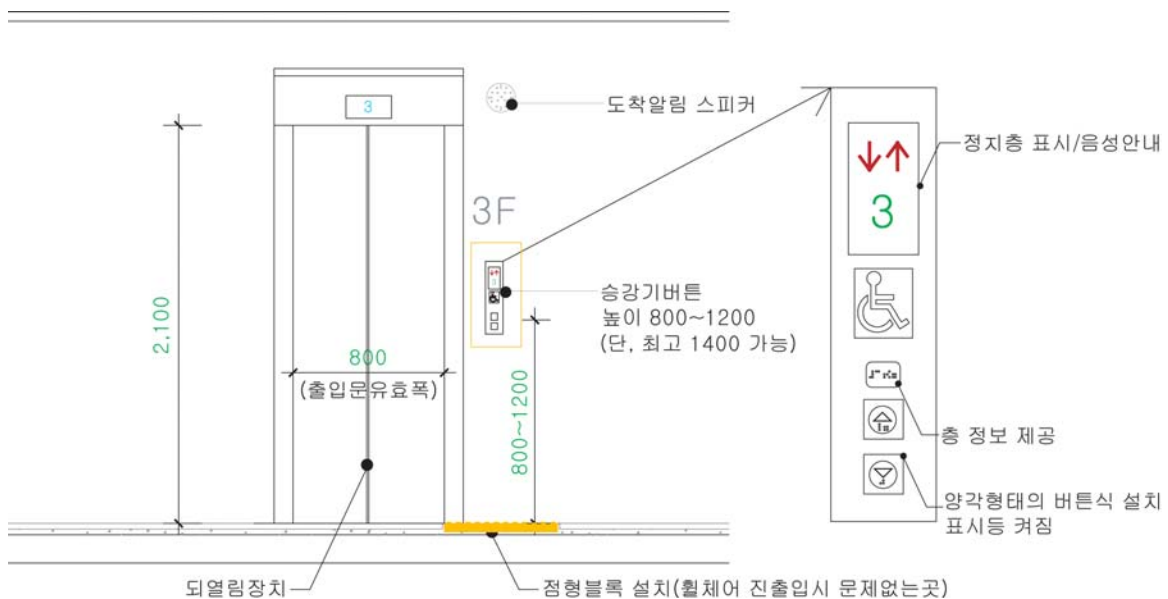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쪽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4미터 이하까지로 한다(완화 조항임)
- (2) 승강기내부에는 가로형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을 설치해야 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조작반은 버튼식으로 하며 모든 버튼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 내부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5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마. 각 층 승강장(엘리베이터 타는 곳)에는 도착여부를 알려주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엘리베이터 도착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문 개폐, 층정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아. 각 층의 엘리베이터 조작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해야 한다.
- 자.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버튼 동작음은 beep음까지 가능함)
- 차.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카.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2-34> 엘리베이터 구조, 조작반

승강기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9. 장애인용 승강기 (총 층) 전층운행 하는 것 중 장애인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1개소를 조사	가급적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가-1)						
	승강기 전면 1.4×1.4m 활동 공간 확보(가-2)						
	승강기 틈은 3cm 이하(가-3)						
	내부바닥면적은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신축인 경우 폭은 1.6m 이상(나-1)						
	출입구 유효폭 0.8m이상, 신축인 경우 0.9m 이상.(나-2)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1.4m 이하까지 완화 가능)(다-1)						
	승강기 내부 조작반 가로형 0.85m 내외 높이(다-2)						
	모든 버튼에 점자 표기가 평행(점자 표지판 설치)(다-3.4)	미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재질, 시공방법 기술 -	
	실내 손잡이설치	손잡이설치여부	연속설치 (3cm 간격이내)	손잡이 높이	손잡이 지름	엘리베이터과 손잡이 간격	
	연속설치하거나 측면과 후면에 3cm이내 간격으로 설치, 0.8m~0.9m 손잡이 높이, 2중인 경우 위쪽 0.85m내외, 아래쪽 0.65m 내외, 3.2~3.8cm 지름, 엘리베이터와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라-1)						
	승강기 내부 후면 거울 부착(1.4×1.4m 이하인 경우)(라-2)						
	승강기 외부는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엘리베이터 음향신호장치(도착음) 동작(라-3)						
	승강기 내부는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라-3)						
	유사시(킴 등)자동적 되열림장치를 설치(라-5)						
	점자블록 설치(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0.3m 점형 블록)(설치해야할 개수 = 조사층수)(라-6)	미설치	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	유지관리	시공방법 기술 -
	승강기 전면 유리 사용 권장(라-7)						
	조작버튼 동작시 층수 안내 출력 의무(라-8)						
토글방식인 경우 점멸등이 켜지면서 층수 음성안내, 두 번째 동작시 취소 안내음 출력 의무(라-8)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음성으로 출입구 방향을 지시(라-9)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150lx 이상(라-10)							

※ 모든 엘리베이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 전층 운행하는 장애인마크가 표시된 엘리베이터 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함. 조사 층은 실제 내방, 민원처리 가능한 층만 조사하도록 함(구청장실, 직원휴게실, 외부인 출입금지 등 공간은 배제하고 조사하도록 함), 층별 조사표를 작성 후 취합 작성하도록 함

엘리베이터 사례



<이룸센터>

- 모든 버튼에 점자표기 병행 및 승강기 외부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설치, 조작반 앞 점자블록 2장 설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모든 버튼에 점자표기 병행 및 승강기 외부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설치, 조작반 앞 점자블록 2장 설치



<용산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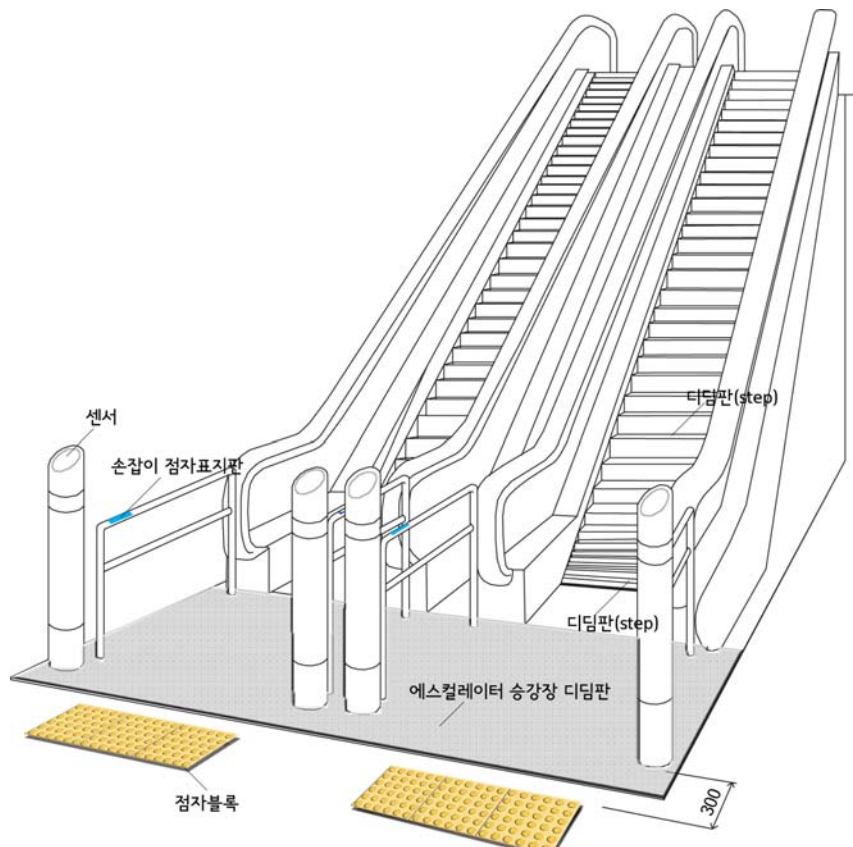
- 모든 버튼에 점자표기 병행 및 승강기 외부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설치, 조작반 앞 점자블록 2장 설치



<송파구청>

- 모든 버튼에 점자표기 병행 및 승강기 외부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설치, 조작반 앞 점자블록 2장 설치

8. 에스컬레이터



<그림 2-36> 에스컬레이터 사례

가. 유효 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 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수평 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목적지방향, 층 정보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손잡이 규정은 세부기준은 제5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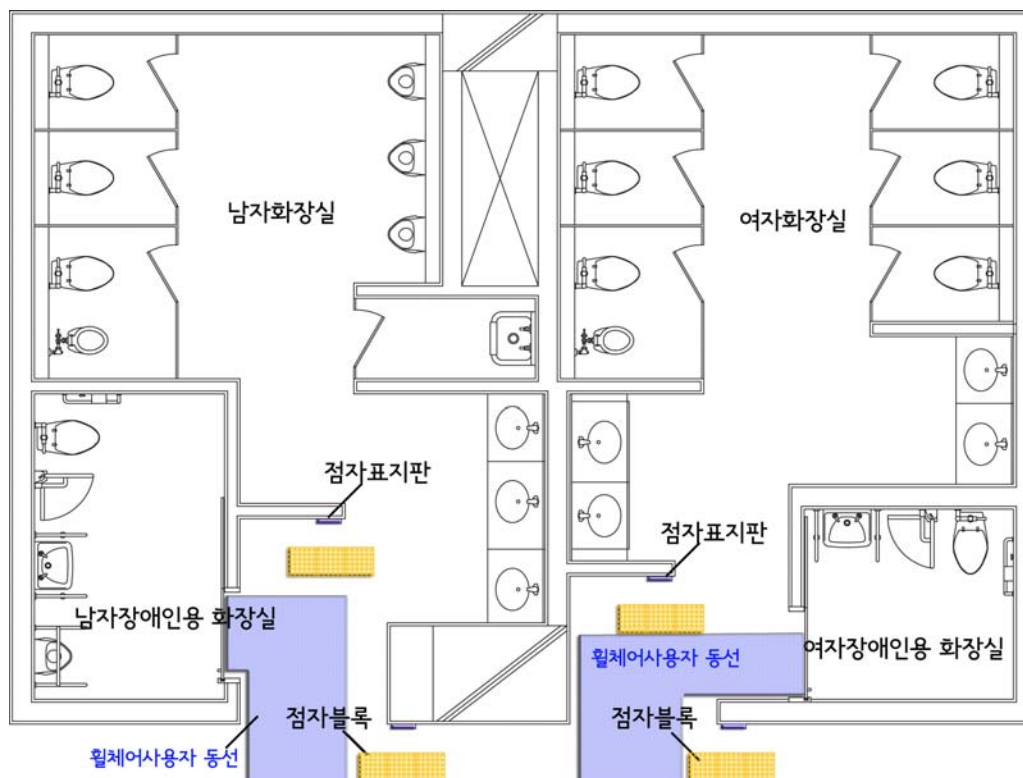
다. 에스컬레이터 상하부 승강장 디딤판 전면에 점형블록을 실제 에스컬레이터 진입 폭만큼 설치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10. 에스컬레이터 (총개수)	유효폭은 0.8m 및 30m/min 이하속도(가-1,2)						
	수평이동손잡이 1.2m 설치(다-1,2)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 권장(다-3)						
	손잡이설치 0.8m~0.9m 손잡이 높이, 3.2~3.8cm 지름, 에스컬레이터와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다-3)	손잡이설치여부	손잡이높이	손잡이지름	에스컬레이터와 손잡이 간격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점자 표지판 설치(설치해야할 개수 -3)) (사	미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재질, 시공 방법 기술 -

※ 역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손잡이 점자표지판의 표기는 '진입금지'등으로 하고, 조사 층은 실제 내방, 민원처리 가능한 층만 조사하도록 함(구청장실, 직원휴게실, 외부인 출입금지 등 공간은 배제하고 조사하도록 함), 층별 조사표를 작성 후 취합 작성하도록 함.

9. 일반화장실



<그림 2-40> 화장실 사례

가.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다.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화장실 출입구와 점자표지판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3장을 연결 설치하여 남녀화장실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마. 세면대의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세면대의 온냉수는 좌온우냉의 형식으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점자를 설치해야 한다.
- 사.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안내멘트 예 우측은 남자, 좌측은 여자화장실입니다.)
- 아. 대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비데 조절부에 점자를 병기하거나 양각화 된 버튼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 현장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내용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13. 일반화장실 (총) 일반화장실내에 따로 장애인용 대면기가 설치된 경우	접근용이(가.1-가)							
	높이차이 제거 및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가.2-가)							
	점형블록 설치, 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설치해야할 개수)(가.2-나)	미설치	완전설치	재질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	유지관리	시공방법 기술 -
	벽면 점자표지판 설치, 남자용 여자용 구분하여 벽면 1.5m 높이에 설치, 공용인 경우 공용인 표시(가.3-가)	미설치	완전설치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재질 시공방법 기술 -
	세면대 세정장치 광감지, 누름버튼, 레버식(가.3-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음성유도기 설치 의무(가.3-다)	설치여부	설치위치	안내멘트	음질상태	동작여부		
	수도꼭지 냉, 온수 구분 점자표기(라.2-나)							

화장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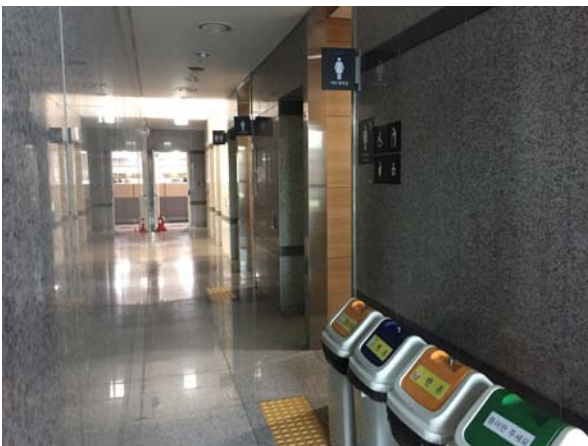
<이룸센터>

- 점자표지판(+촉지도) 및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전용시설로 음성유도기 설치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점자표지판(+촉지도) 및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전용시설로 음성유도기 설치



<용산구청>

- 점자표지판 및 점자블록 설치



<송파구청>

- 점자표지판 및 점자블록 설치

10. 인적서비스 및 민원실



<그림 2-45> 민원실 내 편의시설 사례

- 가. 로비층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민원처리를 도울 수 있는 직원을 호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호출된 직원의 인적서비스의 수준은 단순위치 안내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위한 대독, 대필 서비스는 물론 사전에 시각장애인 보행안내법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어야 한다.
-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무 비치용품은 8배율의 이상의 확대경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CCTV, 독서 확대기 등과 민원 사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점자업무안내책자로 관내 모든 민원실에 각각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인적서비스 및 민원실 현장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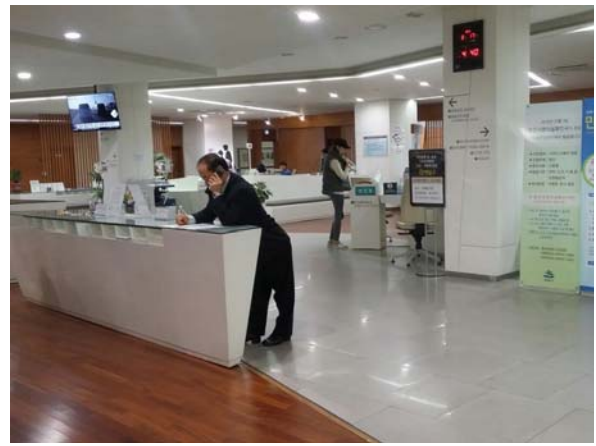
항목	조사내용	설치여부 → 준수(○), 미흡(×), 해당없음(-)		비고(서술식 내용)
인적서비스 및 민원실	인적 서비스 지원가능 여부(권장)(가)			로비 층
	점자업무안내책자 구비(홍보물, 소식지 등은 제외) (구비되어야 할 총수) (나)	미설치	준수여부	
	8배율 이상의 확대경(연령별 돋보기, 저배율 확대경은 제외)(구비되어야 할 총수) (나)	미설치	준수여부	

민원실 사례



<용산구청>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무 비치용품은 8배율의 이상의 확대경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CCTV, 독서 확대기 등과 민원 사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점자업무안내책자로 관내 모든 민원실에 각각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함



<송파구청>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무 비치용품은 8배율의 이상의 확대경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CCTV, 독서 확대기 등과 민원 사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점자업무안내책자로 관내 모든 민원실에 각각 1개 이상 구비되어야 함

Ⅲ. 교통약자법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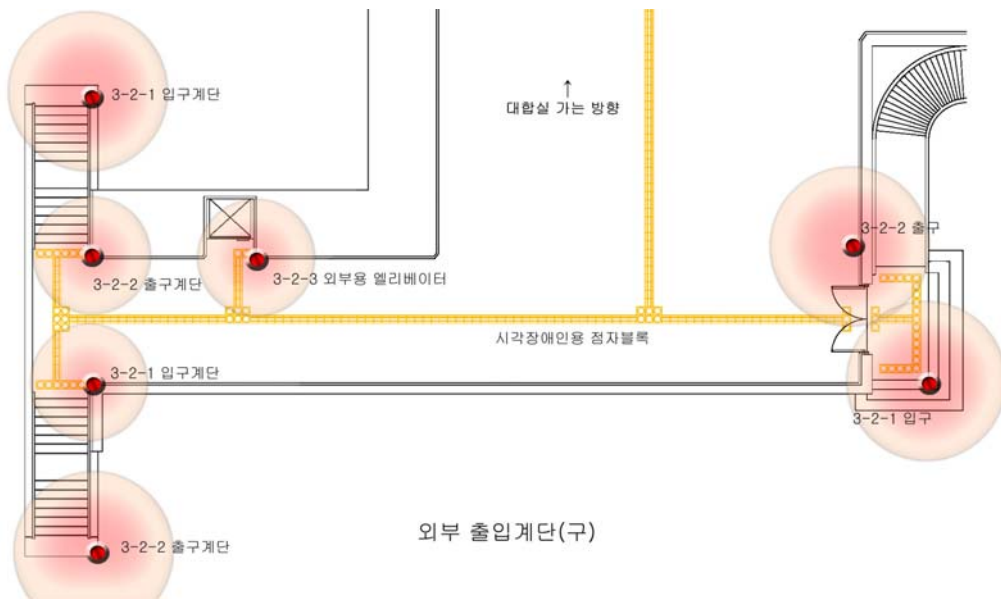
- 자동안내방송시설(국어, 영어), 전자문자안내판, 행선지 표시(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 교통약자용 좌석(버스의 경우 전체 좌석의 3분의 1이상) 등.

2. 여객시설

-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기본적으로 편의증진법 동일, 다른 부분만 추려 설명하도록 함, 점자표지판, 음성유도기 안내멘트 등은 일반인을 위한 사인보드의 내용과 일치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외부출입구(계단), 출입문

- (1) 점자블록(편의증진법과 동일, 계단, 단차 등)
- (2) 점자표지판은 계단의 손잡이에 한해 설치한다. 문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근(타는 방향) '→ X호선(또는 XX선) 0000역 x번 출입구', 나가는 부근 '→ X번 출입구 0000,000방면' 으로 한다.
- (3) 음성유도기는 외부출입구 부근에 나가는 부근, 들어오는 부근 각 1개소를 주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1개소 설치한다. 멘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근(타는 방향) 'X호선(또는 XX선) 0000역 x번 출입구 x층 대합실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나가는 부근 'X번 출입구 0000,000방면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앞입니다.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가급적 우측통행을 고려하여 설치하면 특히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운행에스컬레이터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잘못 설치할 경우 역진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주의바람)



- (4) 점자안내판은 열차 타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외부출입구 인근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법적으로 외부출입구에 음성유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함) 보도외부에 설치하는 유지관리 및 보행 장애물이되므로 보통 역 대합실 들어오자마자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계단/ ES/ EL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손잡이			
	설치 여부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재질 규격	이격 거리	진행 및 설 치위 치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설치 위치	안내 멘트	음질 상태	동작 여부	(타는 방향 기준)	설치 여부	완전 설치	손잡 이규 격
상좌					상										좌			
상우																		
하좌					하										우			
하우																		

※ 계단 에스컬레이터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을 사용하도록 함. 예) 1번 출입구 계단, 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E 내부계단 등

나. 외부엘리베이터

- (1) 점자블록(편의증진법과 동일, 계단, 단차 등)
- (2)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손잡이가 있을 경우 나오는 곳 좌우, 타는 곳 좌우 4개 설치해야한다. 나오는 부근 점자표지판 문구는 기본적으로 'XXX, 000방면' 등 실질적인 내용을 표기하며(경사로 내려감, 올라감 등 불필요한 문구는 설치 필요 없음), 타는 부근 점자표지판 문구는 '→X호선 000역 엘리베이터' 등으로 표기함.
- (3) 외부 엘리베이터(지상)의 조작반 위 높이 2.0~2.5m 부근에 음성유도기를 설치하며 외부출입구 부근에 나가는부근, 들어오는 부근 각 1개소를 주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1개소 설치한다. 멘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근(타는 방향) 'X호선(또는 XX선) 0000역 x번 출입구 x층 대합실 내

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나가는 부근 ‘X번 출입구 0000,000방면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앞입니다. 대합실에서 지상 올라(내려)가는 부근 음성유도기의 멘트는 ‘XXX, 000 방면 올라(내려)가는 외부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계단/ ES/ EL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손잡이			
	설치 여부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재질 규격	이격 거리	진행 및 설 치 위 치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설치 위치	안내 멘트	음질 상태	동작 여부	(타는 방향 기준)	설치 여부	완전 설치	손잡 이규 격
상좌					상										좌			
상우																		
하좌					하										우			
하우																		

다. 내부대합실 연결계단/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 (1) 점자블록(편의증진법과 동일, 계단, 단차 등)
- (2) 점자표지판 문구는 들어가는(타는) 경우 ‘→ X층 대합실’, 나가는 경우 ‘→ X, X번 출구 방향 X층 대합실 나가는 곳’ 등.(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 (3) 음성유도기 안내멘트 들어가는(타는) 경우 ‘X층 대합실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엘리베이터 앞입니다.’, 나가는 경우 ‘X,X번 출구방향 X층 대합실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계단/ ES/ EL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손잡이			
	설치 여부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재질 규격	이격 거리	진행 및 설 치 위 치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설치 위치	안내 멘트	음질 상태	동작 여부	(타는 방향 기준)	설치 여부	완전 설치	손잡 이규 격
상좌					상										좌			
상우																		
하좌					하										우			
하우																		

라. 승강장 연결계단/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 (1) 점자블록(편의증진법과 동일, 계단, 단차 등)
- (2) 점자표지판 문구는 들어가는(타는) 경우 중 상대식 ‘→ XX방면 승강장(타는 곳)’ 섬식, ‘→ 우측 XX방면, 좌측 XX방면 승강장(타는 곳)’ 나오는 경우 ‘→ X, X번 출구 방향 X층 대합실 나가는 곳’
- (3) 음성유도기 안내멘트 들어가는(타는) 경우 상대식 ‘XX방면 승강장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섬식 ‘우측 XX방면, 좌측 XX방면 승강장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엘리베이터 앞입니다.’ (단 승강함이 많은 경우는 승강함 넘버도 음성멘트에 담아야 함) 나오는 경우 ‘X,X 번 출구 방향 X층 대합실 내려(올라)가는 계단/에스컬/엘리베이터 앞입니다.’

계단/ ES/ EL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음성유도기					손잡이			
	설치 여부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재질 규격	이격 거리	진행 및 설 치 위 치	유지 관리	설치 여부	설치 위치	안내 멘트	음질 상태	동작 여부	(타는 방향 기준)	설치 여부	완전 설치	손잡 이 규 격
	상좌				상										좌			
	상우																	
	하좌				하										우			
	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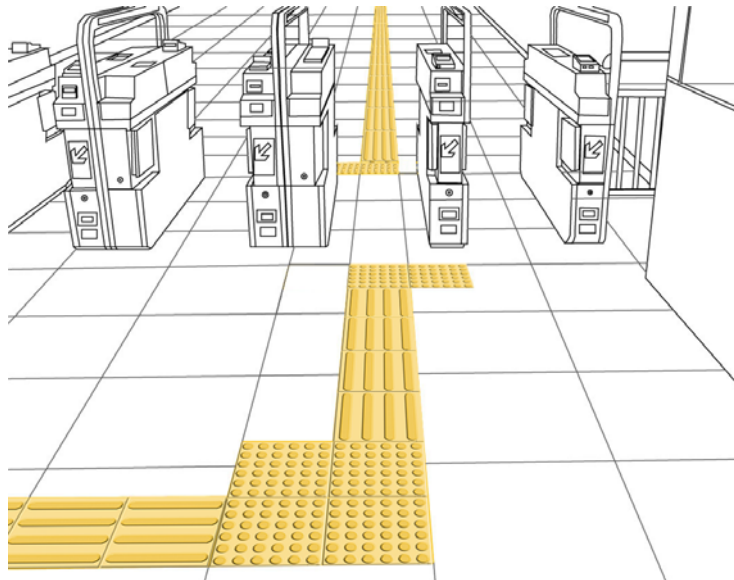
마. 매표시설(표 확인하는 곳(개표구), 표 사는 곳(자동발매기, 매표소))

(1) 매표소, 자동발매기(표 사는 곳)

- ① 점자블록은 여객시설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실제로 표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유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음성유도기는 여객시설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실제로 표를 살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안내 멘트는 ‘자동발매기 앞입니다.’ 또는 ‘표 사는 곳입니다.’으로 한다. 만약 5m 이내에 개표구가 있어서 추가 설치가 불가할 경우 ‘표 사는 곳입니다. 좌측(또는 우측)에 표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식으로 동시 안내도 가능 하다.

(2) 개표구(표 확인하는 곳)

- ① 점자블록은 여객시설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실제로 표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유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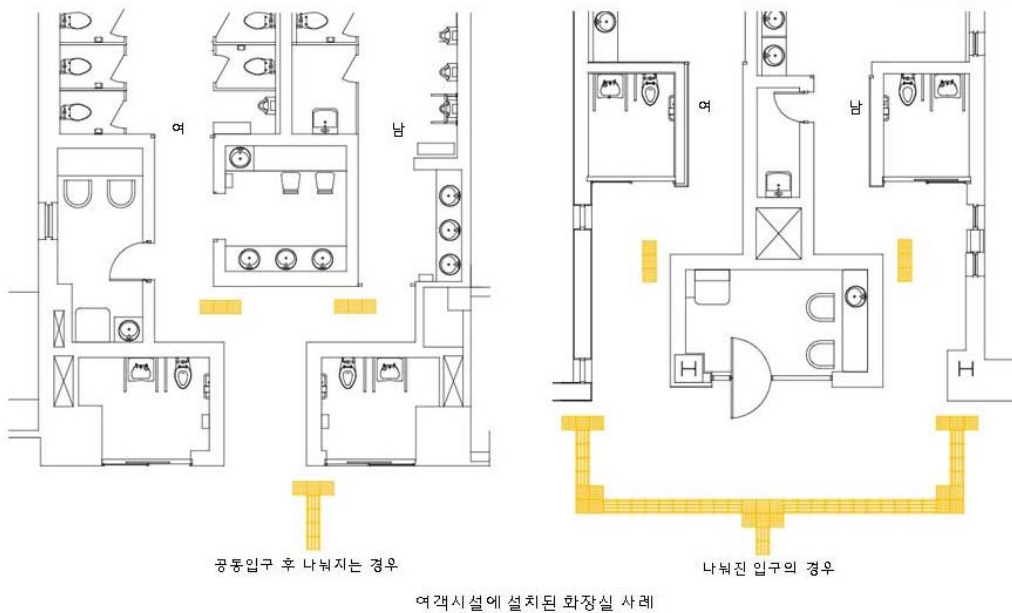
<그림 3-45> 개찰구 사례

- ② 개표구 카드 대는 곳에 점자 표기 또는 양각화된 선으로 대는 곳의 실제 위치를 간단한 손스침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권장), 또한 이전까지 점자를 집표하거나 카드 대는 곳 인근에 표기하여 출구 번호 및 방향 지시의 내용을 적었지만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성유도기, 기타 손잡이 점자표지판으로 정보 제공을 대체하도록 한다.

- ③ 음성유도기는 표를 확인할 수 있는 개표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하며, 안내멘트는 ‘표 확인하는 곳입니다.’으로 한다.

바. 위생시설(화장실)

(1) 점자블록(편의증진법과 동일, 계단, 단차 등)



- (2) 점자표지판 문구는 남녀를 구별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입구 후 나뉘는 경우 공동입구에 ‘직진 후 좌측 남자, 우측여자화장실’ 실제적인 문구를 담아야 한다.



- (3) 음성유도기 안내멘트 일반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한 경우와 공동입구 후 나뉘는 경우로 나뉘는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경우 둘이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한 화장실을 설명 후 그 기준으로 위치 설명하는 식으로 한다(예: 남자화장실입니다. 좌측에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 단 남녀 화장실 진입구가 1m 이내로 인접해 있을 경우 ‘좌측 남자화장실, 우측 여자화장실입니다.’로 설명가능하다. 남녀화장실이 10m 이상 떨어진 경우는 남, 녀 화장실 각각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음성 안내하도록

한다. 공동입구 후 나뉘지는 경우는 ‘직진 후 좌측 남자화장실, 우측여자화장실입니다.’ 또는 ‘통로 진입 후 좌(우)측 첫번째 남자화장실, 두 번째 여자화장실입니다.’ 등으로 실제적인 안내멘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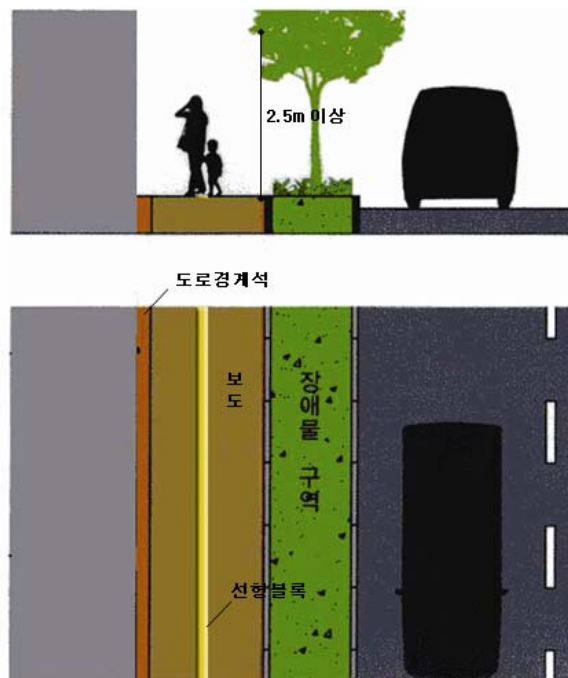
3. 도로(보도 폭 2m 이상인 경우)

가. 일반지침 - 최소 유효 폭, 평탄 마감, 완만한 경사, 보차분리, 연속성.

- (1) 보도의 최소 유효 폭: 보행 장애물 등 노상시설을 제외한 최소 폭으로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보도의 마감재가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보도블록인 경우 줄눈간격은 1cm 미만으로 한다.
- (3) 노상의 배수처리를 위한 횡단경사는 보행할 때 방해되지 않는 수준의 기울기를 가진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보도와 차도는 연석을 설치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로 하며, 보도와 질감, 색상이 구분이 되는 재질로 한다.
- (5) 보행자를 위한 보도는 연속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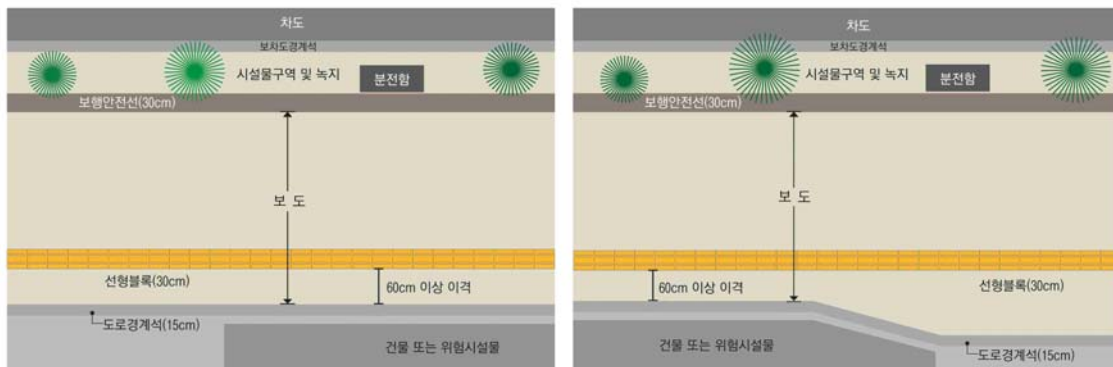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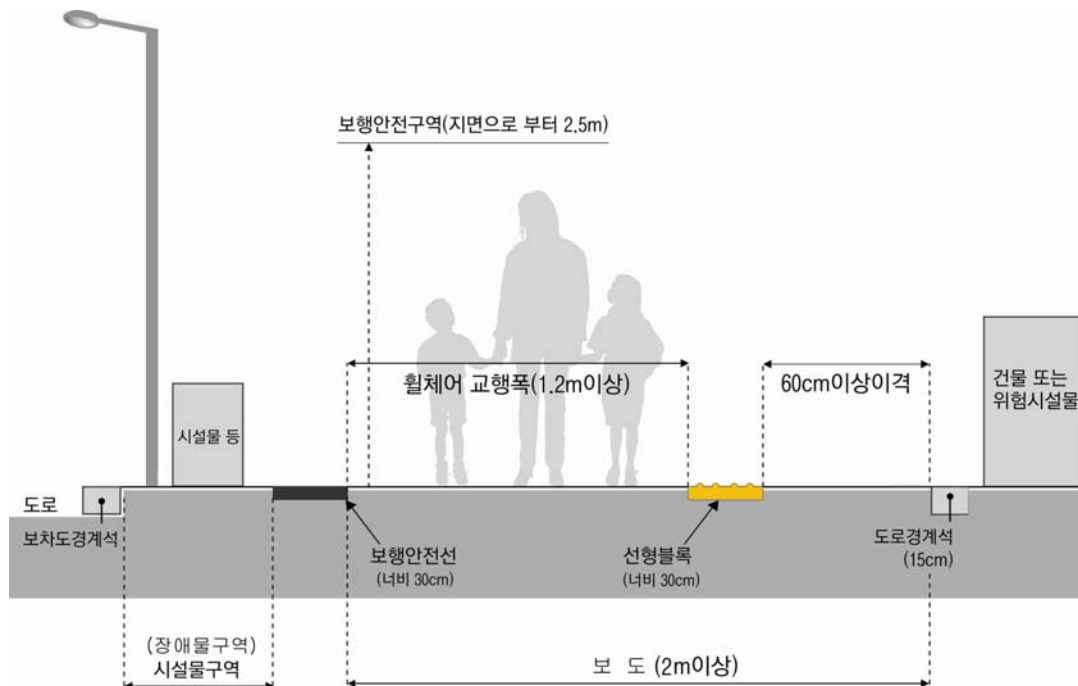
나. 장애물 제거

- (1) 보도 상 보행자를 위한 공간 안의 가로수, 가로등, 분전반, 버스정류장 벤치 또는 캐노피(canopy), 우체통, 노점, 휴지통, 불법 불량드, 자전거보관대 등은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보행 경로에 방해가 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 (2) 보도에 배수로 덮개가 있을 경우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양방향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보도 바닥에서부터 상부 2.5m 높이까지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야 하며, 건물의 부수적인 간판 등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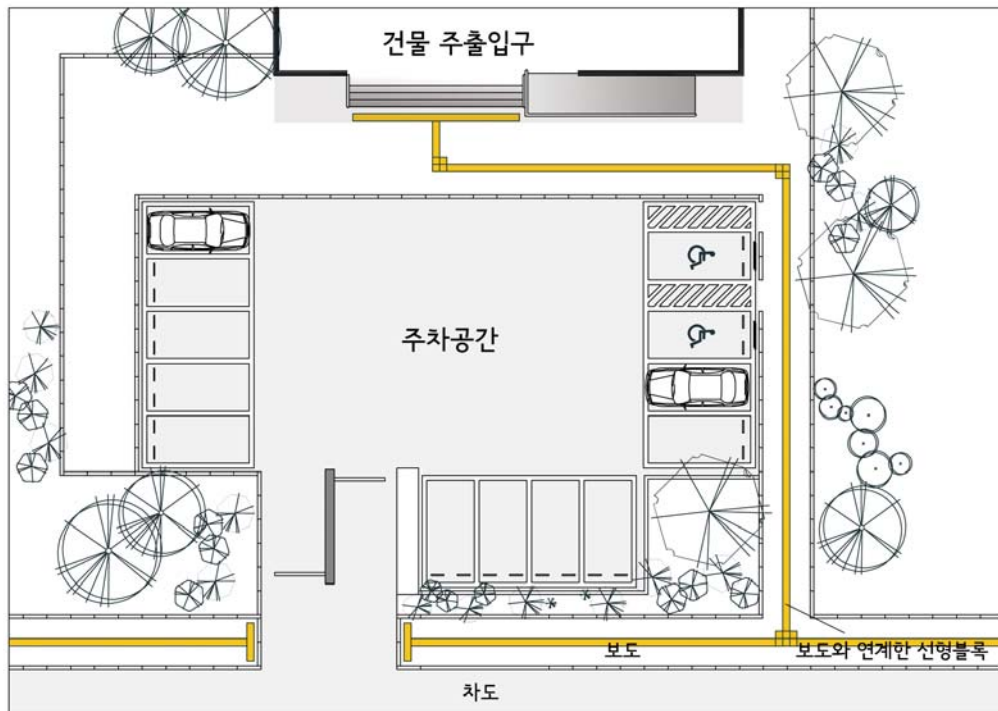
다. 선형블록의 설치

- (1) 공원, 공중화장실, 주민 센터 및 청사 등 관공서, 장례식장,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사회복지시설, 학교, 건축면적 1,000㎡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등의 인근 보도와 주변 교통시설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기준선인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보도상의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단면으로 봤을 때 차도 반대편, 즉 도로 경계선(boundary line of road) 쪽에서 60cm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보도의 유효 폭이 좁은 경우는 중앙 설치하도록 한다.)
- (3) 선형블록의 재질은 KS규격에 충족해야 하며, 실외의 경우 석재, 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무 재질, PVC, 철재 등과 같이 미끄럼과 눈부심을 유발하는 재질은 사용을 금해야 한다.
- (4)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cm 공간에는 어떠한 보행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5) 선형블록의 설치는 부록 1.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한다.



라. 주변과의 연계성

- (1)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서식2와 같이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설치의 의무인 대상시설 및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건물, 공원 등의 접근 동선 및 주변 보도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2) 선형블록의 유도 시작은 인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 외부 출입구 등 대중교통시설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림 4-5> 대지면적내 선형블록 유도

마. 보행자 알림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

- (1)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환승·공항·항만 시설 등),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2)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3)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4)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안내표지판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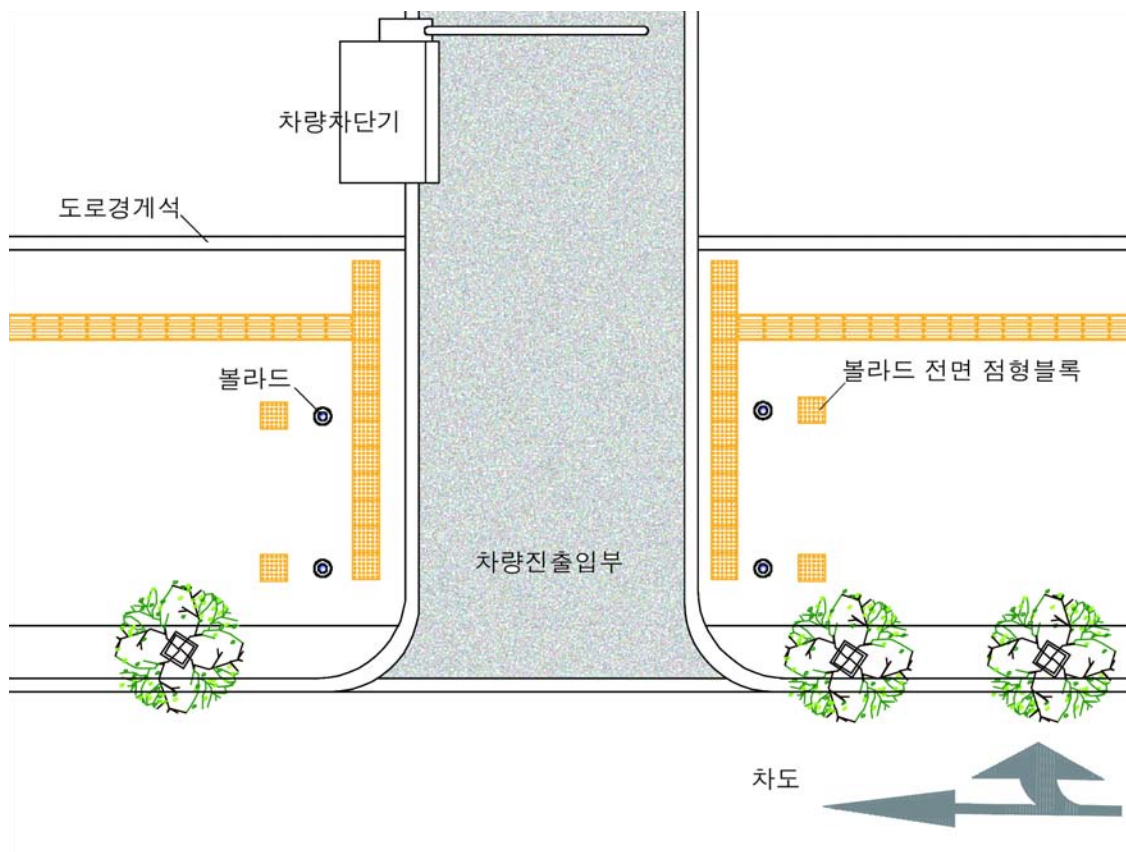
4. 차량진출입구

가. 일반지침 - 대비되는 평탄 마감, 보행자 중심의 보차교행

- (1)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 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하며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2)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 (3) 진출입부의 높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식으로 바닥 마감할 수 있으며, 이때 보도와 접하는 면은 턱 낮추기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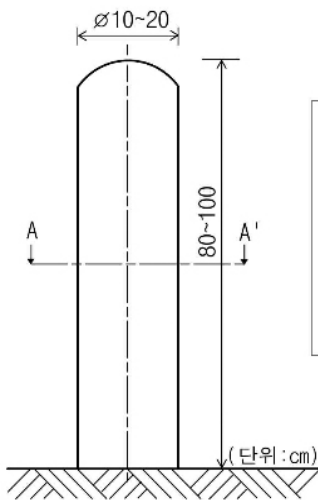
나. 점자블록 설치

- (1) 점자블록은 보도에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진출입부상에는 설치하지 아니 한다.
- (2) 차량진출입부와 보도의 경계부분에 보도 유효 폭만큼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3) 점형블록의 설치방향은 보행방향과 수직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경우에는 부록 1. 점자블록의 설계원칙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5) 차량진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볼라드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사전에 장애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전면이라 함은 차량진출입부 쪽이 아닌 보행자가 진입하는 방향의 보도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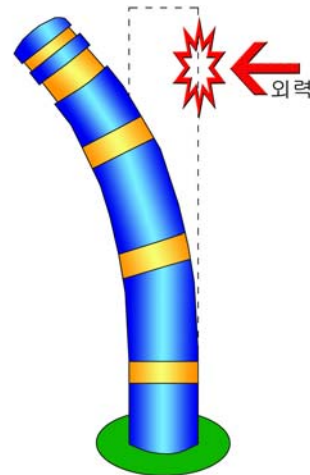


다. 볼라드 설치의 최소화

- (1) 차량진출입부에 차량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약자 등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개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 (2) 선형블록 인근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형블록에서 좌우 6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로 보행을 유도한다.
- (3) 볼라드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와 보도와 대비되는 색상을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볼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볼라드의 간격은 2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특히 보행자에게 충격을 줄수 있는 상단 부분은 반구형 처리를 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볼라드 전면 0.3m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1장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12>



<그림13>

※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이라 불리는 국지 도로의 경우 보차혼용도로로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제한이 있음. 이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장애인들의 주된 생활공간 또는 규모가 작은 시설 및 사업장 인근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로 지정하여 행정 운영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5. 전체 턱 낮춤 횡단시설



가. 일반지침 - 턱 낮추기를 위한 연석경사로 설치, 2cm 이하의 높이차, 완만한 경사 및 평탄한 바닥 마감과 함께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 (1)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전체 턱 낮추기를 하기 위한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최소한의 높이 차이는 요구된다.
- (3) 횡단보도 폭만큼 턱 낮추기를 하며, 이때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한다.
- (4) 횡단보도 진입부 및 횡단보도는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5) 횡단보도 폭 전면에는 가로수, 가로등, 분전반 및 교통신호기 지주 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점자블록 설치

- (1) 횡단보도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보도의 위치 및 폭, 횡단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점형블록은 2중으로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방향은 횡단방향과 수직선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3)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점형블록의 중심에서부터 보도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때 선형블록은 한 줄로 설치하며 자세한 설치 지침은 부록 1.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한다.
- (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0.3m에는 버튼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해야 한다.
- (5) 부득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볼라드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사전에 장애물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다.

(6) 이외의 설치 지침은 부록1.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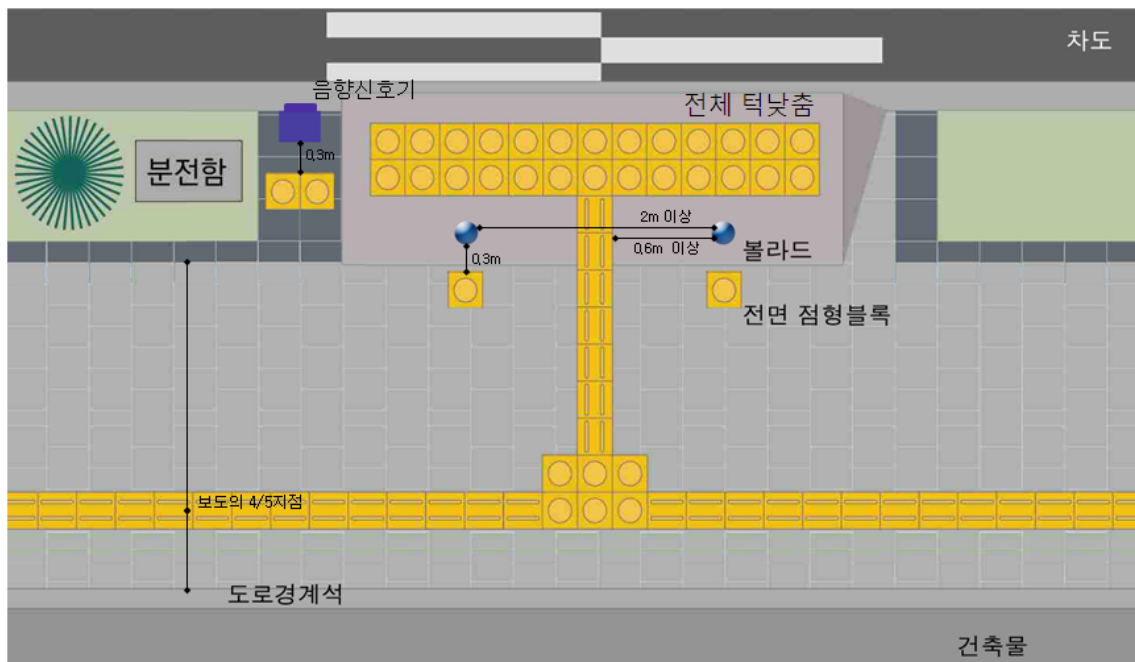
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설치

- (1)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교통신호기의 위치 및 신호 변화를 멜로디와 음성 등 음향으로 알려주는 시설로 무선송신기(리모콘)와 지주에 설치한 수동식 버튼으로 동작하며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2)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맹학교, 대린원 등)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한국시각장애인 지부 및 지회 사무실, 안마시술소 등)
 -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 (3)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주는 횡단보도로부터 1m 이내에 있어야 한다.
- (4)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또는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5) 음향신호기 수신기 함체(출력기기)와 수동식 버튼(송신기)은 같은 지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수신기 함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여 횡단 시작점의 음향신호기와 종점의 음향신호기가 한 조로 동작하도록 하고,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그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m로 한다.
- (7) 수동식 버튼의 설치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1.0m ~ 1.2m 정도로 하며 설치방향은 횡단방향의 배면(뒷면) 지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이 밖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 및 지침, 멜로디, 안내 멘트 등은 부록 3. 음향신호기 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2009)에 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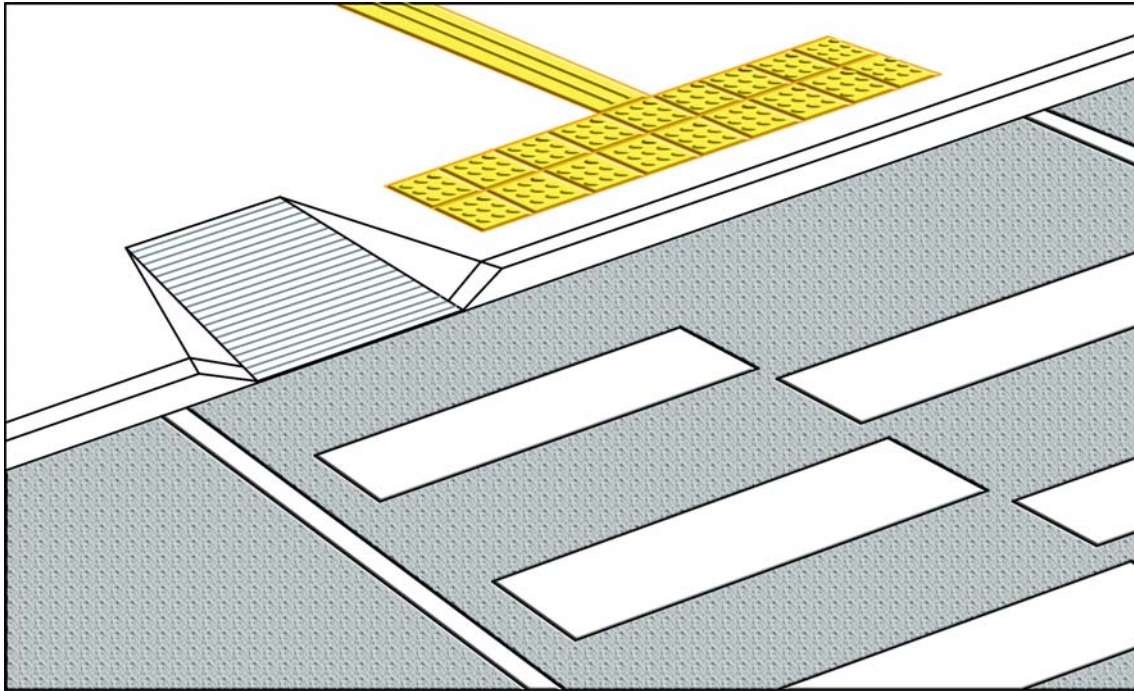


라. 볼라드의 설치 최소화

- (1) 횡단보도에 차량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 등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개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 (2) 이때 볼라드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와 보도와 대비되는 색상을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볼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볼라드의 간격은 2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특히 보행자에게 충격을 줄수 있는 상단 부분은 반구형 처리를 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볼라드 전면 0.3m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1장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부와 지자체는 보도에 대한 차량진입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강구하여 볼라드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6. 부분 턱 낮춤 횡단시설



<그림 4-17> 부분 턱낮춤 횡단보도 사례

가. 일반지침 - 부분 턱 낮추기를 위한 연석경사로 설치, 2cm 이하의 높이차, 완만한 경사 및 평탄한 바닥 마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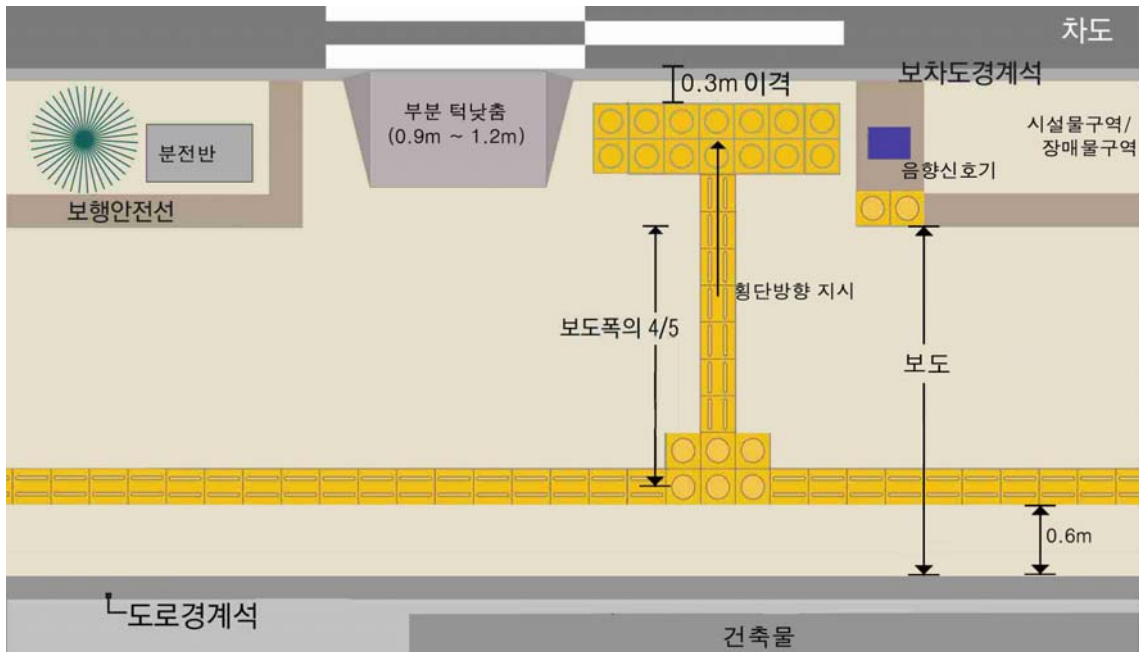
- (1)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부분 턱 낮추기에 필요한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최소한의 높이 차이는 요구된다.
- (3) 부분 턱 낮추기를 하기 위한 연석경사로의 유효 폭은 0.9미터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되,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 까지 가능하다. 단 연석경사로의 폭이 넓은 경우 차량의 진입이 가능해 지므로 차량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 (4) 횡단보도 진입부 및 횡단보도는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5) 횡단보도 폭 전면에는 가로수, 가로등, 분전반 및 교통신호기 지주 등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나. 점자블록 설치

- (1)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의 동선 분리를 위해 연석경사로 폭을 제외한 횡단보도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2) 점형블록은 2중으로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방향은 횡단방향과 수직선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3)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 전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점형블록의 중심에서부터 보도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때 선형블록은 한 줄로 설치하며 자

세한 설치 지침은 부록 1. 점자블록에 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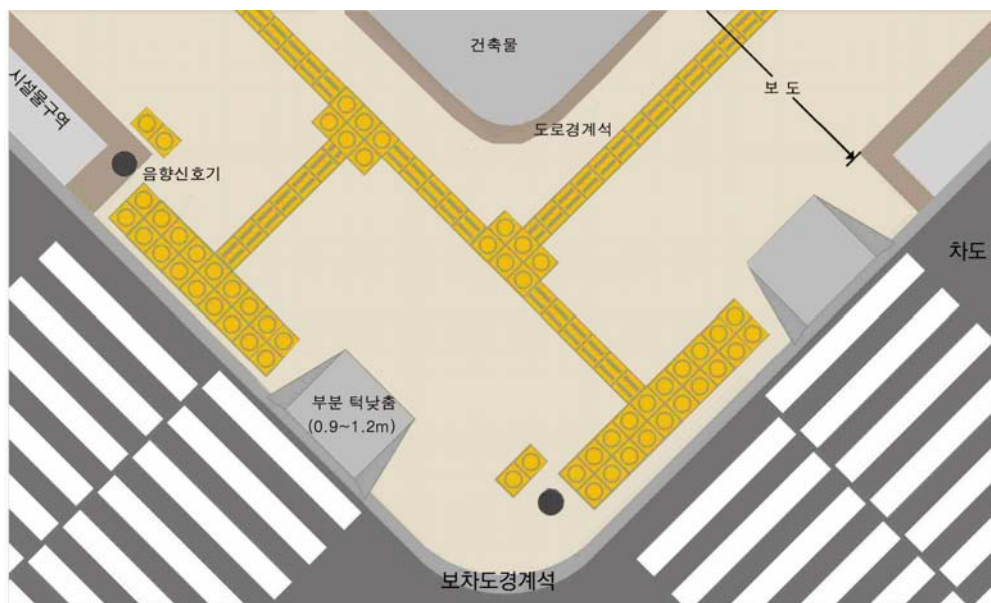
- (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0.3m에는 버튼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해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설치

- (1)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교통신호기의 위치 및 신호 변화를 멜로디와 음성 등 음향으로 알려주는 시설로 무선송신기(리모콘)와 지주에 설치한 수동식 버튼으로 동작하며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2)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맹학교, 대린원 등)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한국시각장애인 지부 및 지회 사무실, 안마시술소 등)
 -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 (3)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주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되, 부분 턱 낮추기를 위한 연석경사로 인근은 피하도록 한다.
- (4)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또는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5) 음향신호기 수신기 합체(출력기기)와 수동식 버튼(송신기)은 같은 지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수신기 합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여 횡단 시작점의 음향신호기와 종점의 음향신호기가 한 조로 동작하며 서로 마주보며 설치되며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m 높이로 한다.
- (7) 수동식 버튼의 설치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1.0m ~ 1.2m 정도로 하며 설치방향은 횡단방향의 배면(뒷면) 지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8) 이 밖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 및 지침, 멜로디, 안내 멘트 등은 부록 3. 음향신호기 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2009)에 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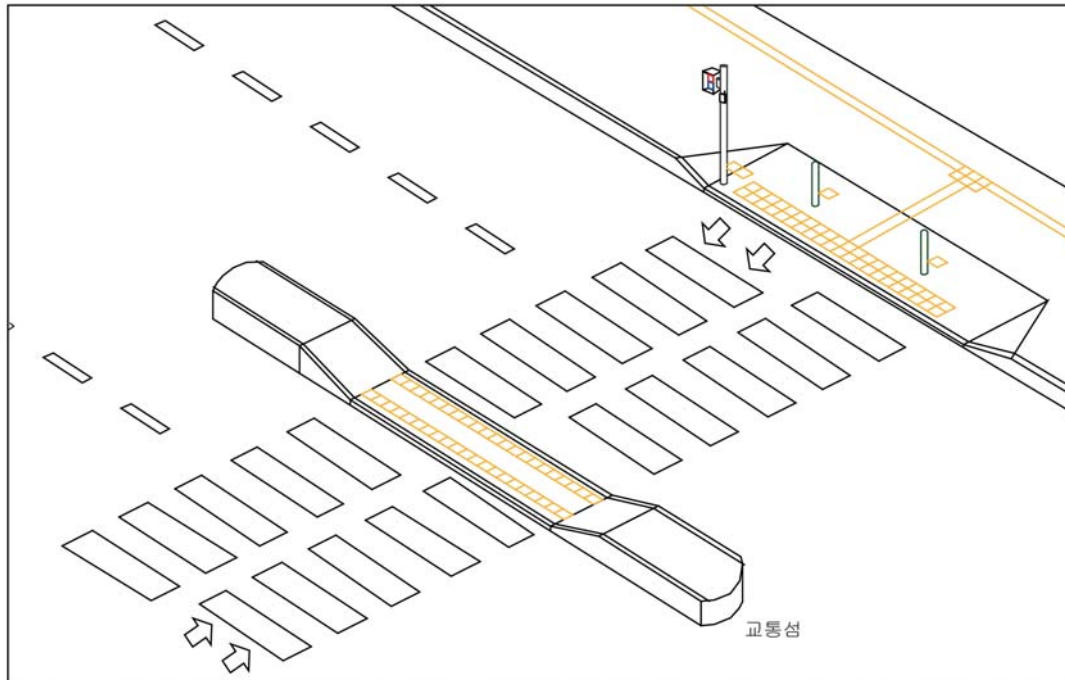


<그림 4-19> 교차로 부분 턱낮춤 횡단보도

라. 볼라드의 설치 금지

- (1) 횡단보도의 부분 턱낮춤의 의미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의 동선 분리와 동시에 볼라드 설치를 금하는 것이므로 부분 턱낮춤을 한 횡단보도에는 볼라드 설치를 금하도록 한다.

7. 교통섬



<그림 4-20> 교통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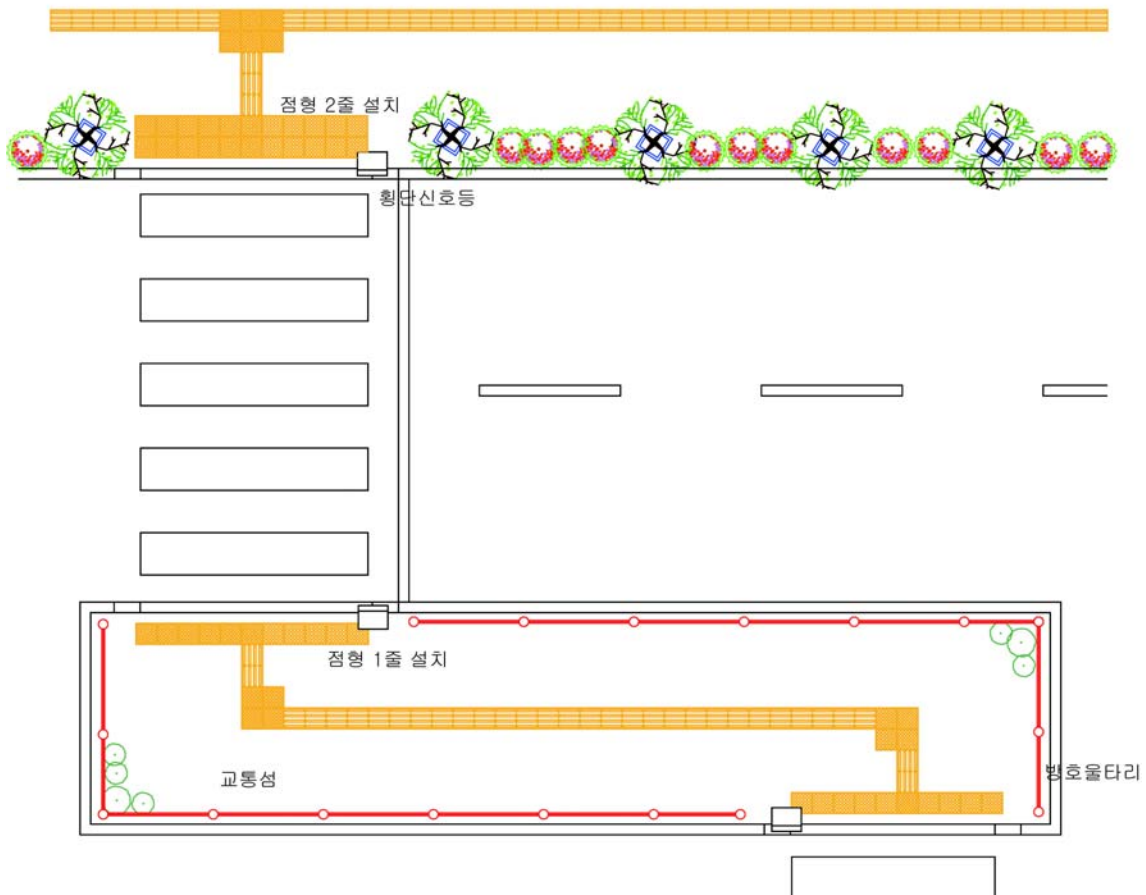
가. 일반지침 - 보차 구분을 위한 연석 높이 확보, 횡단보도 폭만큼 턱낮추기를 위한 연석경사로 설치, 완만한 경사, 평탄한 바닥마감, 장애물 제거, 교통섬의 유효폭 확보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폭을 제외한 교통섬 부근은 차도와의 분리를 위해 연석을 설치하며, 높이는 25cm 이하로 한다. 또한 교통섬 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최소한의 높이차이는 요구된다.
- (3) 교통섬 횡단보도 폭만큼 턱낮추기를 하며, 이때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한다.
- (4) 횡단보도 진입부 및 횡단보도는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5) 횡단보도 폭 전면에는 분전반 및 교통신호기 지주 등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하며 교통섬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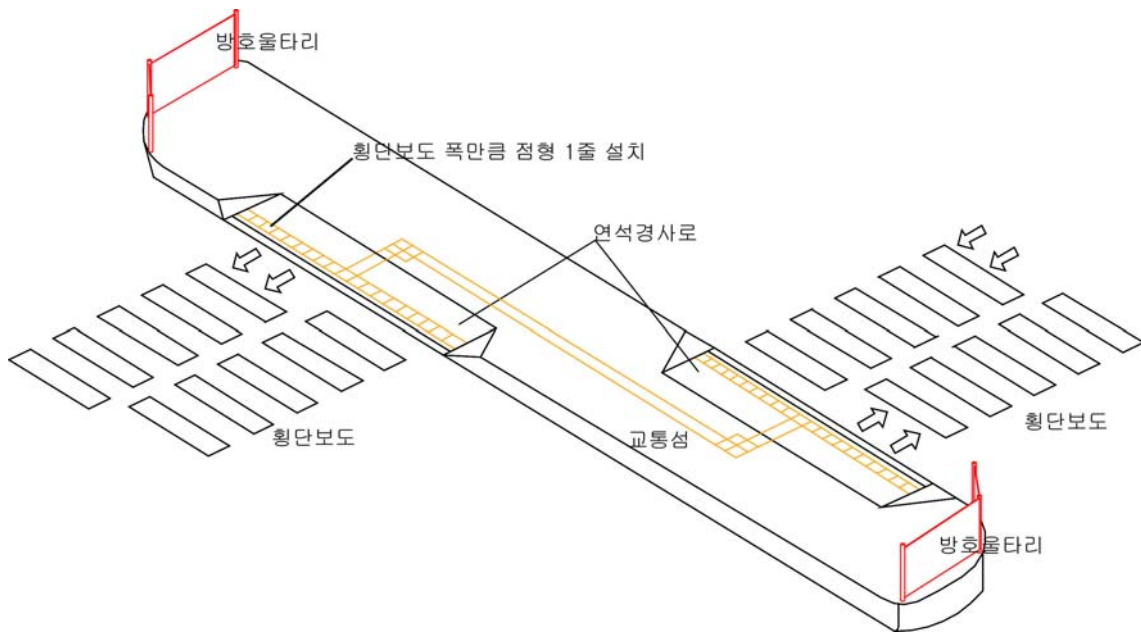
나. 점자블록의 설치

- (1) 교통섬 횡단보도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횡단보도 위치 및 폭, 횡단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점형블록은 2중으로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방향은 횡단방향과 수직선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좁은 교통섬에 점형블록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시각장애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섬의 유효폭이 2.4m 이하인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한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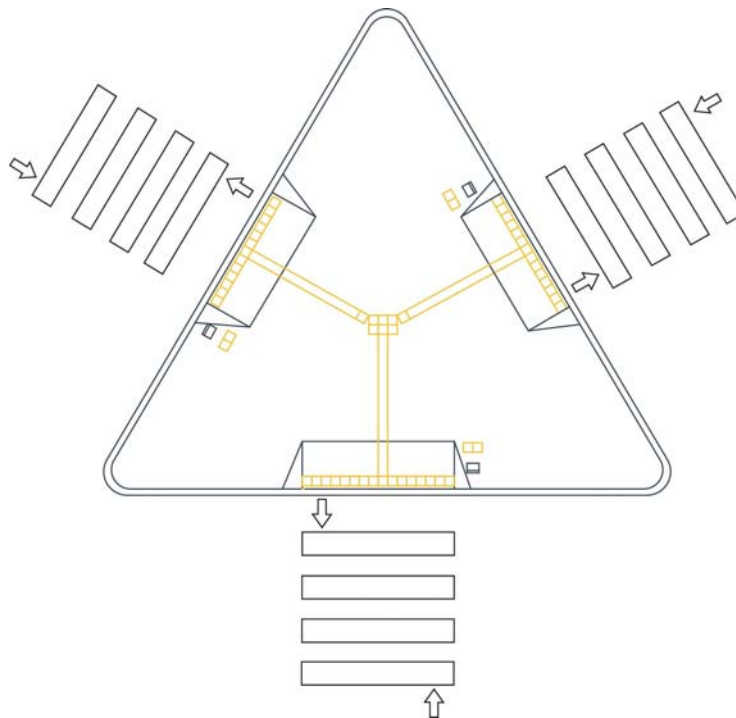
- (3)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 전면 점형블록의 중심에서부터 교통섬을 벗어나는 횡단보도 측 점형블록의 중심으로 연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단 유효폭이 2.4m 이하인 경우 선형블록 설치의 생략하도록 한다.
- (4) 교통섬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있을 경우 버튼 전면 0.3m에는 버튼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해야 한다.
- (5) 교통섬에는 블라드 설치를 금하도록 한다.



<그림 4-21> 교통섬1



<그림 4-22> 교통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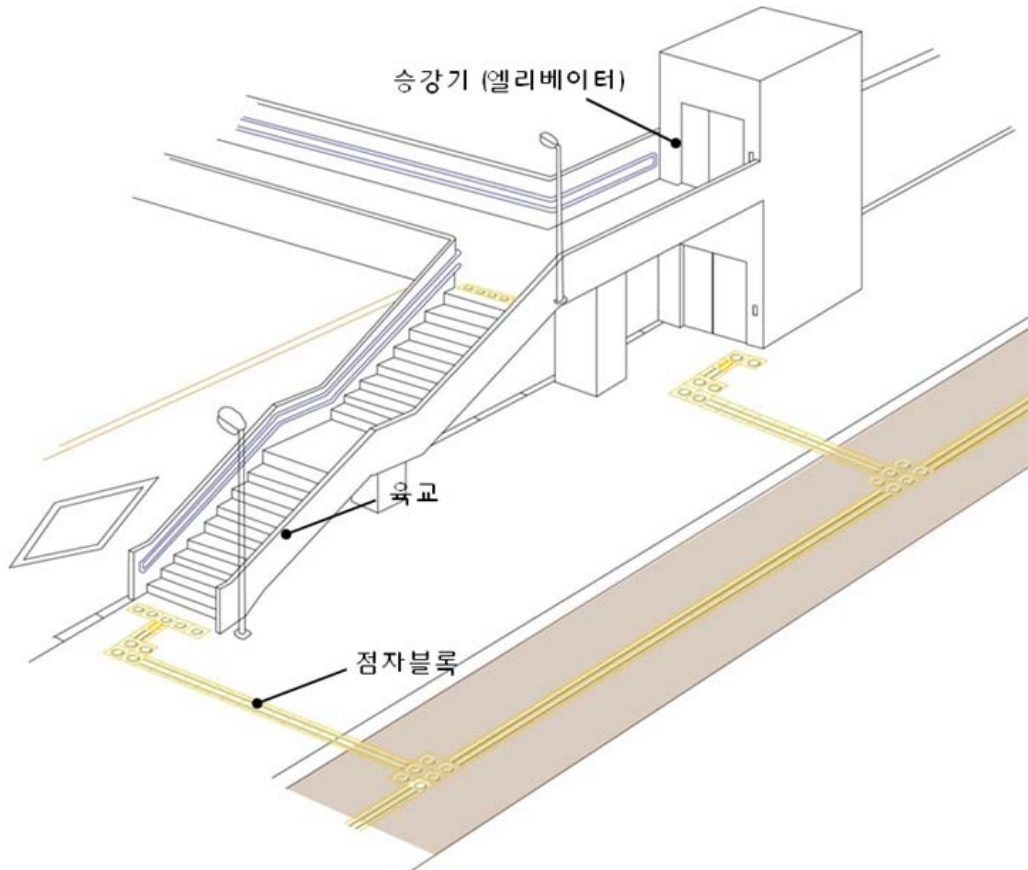


<그림 4-23> 교통섬3

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설치

- (1) 구조상 또는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해 횡단보도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야 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8. 육교 및 지하도로



<그림 4-24> 육교 및 지하도로 사례

가. 일반 지침 - 균일하고 합리적인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크면의 설치와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해야 한다. 사선, 원형의 형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실족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한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내외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참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수평참에는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3)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최소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 (4) 철크면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크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크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해야 한다.(가급적 해당 시설에 있는 모든 계단을 균일하게 한다.)
- (5) 계단코는 3cm 이하로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철크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해야 한다.
- (6)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난간하부에 계단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7) 계단 참 부분에는 회전식 계단의 설치를 금한다.

나. 계단의 식별

- (1) 계단의 식별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단차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 (2) 디딤판은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첩면과 구별이 뚜렷해야 하고 특히 계단코 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재질, 색상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단 및 참의 시작 끝의 디딤판은 다른 계단 디딤판과 색을 달리할 수 있다.
- (3) 육교 및 지하도의 조명으로 인한 음영이 첩면과 디딤판의 구별을 용이하도록 하며 평균 가로등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점형블록 설치

- (1)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은 전면 0.3m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2) 현장 조건상 0.3m 전면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가장 인접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단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 (3) 계단참 부근은 일반적으로 점형블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계단참의 길이가 3m를 초과한 경우, 여러 방향이 나뉘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단 ‘ㄱ’자 ‘ㄷ’등 단순 꺾이는 계단인 경우 설치를 권장한다.)

라.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양옆에는 반드시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단 방법서터 위치에는 끊어질 수 있다.
- (2) 손잡이의 형태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3.2 ~ 3.8cm으로 한다.
- (3)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 0.9m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4) 점자표지판은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 수평손잡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만약 현장 구조상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가까운 손잡이 부근에 설치하도록 한다. 계단참 부근이나 굴절지점에는 설치 생략가능하다.
- (5) 점자표지판의 문구는 화살표방향, 층정보, 목적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각 문구는 아래 각 장소별 예시를 참조하도록 한다.)

-육교 계단: ‘→이룸센터, KBS 방면’

-지하도 계단: ‘←지하2층 지하도 가는곳’, ‘→이룸센터, KBS 방면’

마. 엘리베이터 설치

- (1) 누구나 쉽게 인지되거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바닥면적 및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외부 전면 1.5m×1.5m 이상, 내부 폭 1.1m× 깊이 1.4m 이상)
- (2) 사람이나 물체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승강장 바닥과 엘리베이터 사이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3) 엘리베이터 내에는 출입문을 제외한 측면에 직경 3.2cm ~ 3.8cm의 원형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 0.9m로 하고 측면과는 5cm의 간격이 되게 하며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
- (4) 엘리베이터의 조작반 전면 0.3m에는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함을 원칙으로하며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과 비상호출버튼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표기할 모든 점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규격에 준하도록 한다.(부록 2 점자표지판] 참조)
- (5) 모든 조작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 1.2m 내외 높이로 한다.(휠체어사용자용 가로 조작반의 설치 높이는 0.85m 내외로 한다.)
- (6) 조작반은 버튼 누름식으로 하고 동작 시 점멸등이 켜지게 하여 동작 여부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조작반의 모든 버튼은 누르면 음성, beep음 등 동작음을 출력하여 청각적으로 동작여부를 제공해야 한다.
- (7)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과 외부 조작반은 취소가 가능한 토글 방식이어야 하며 누르면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 주어야 하고 취소할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8) 엘리베이터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 및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도착을 알리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9)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설치되고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문의 개폐, 오르내림, 층 정보 등이 포함된다.)
- (10)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예 ‘들어오신 뒷면(후면)에서 문이 열립니다.’)

9. 버스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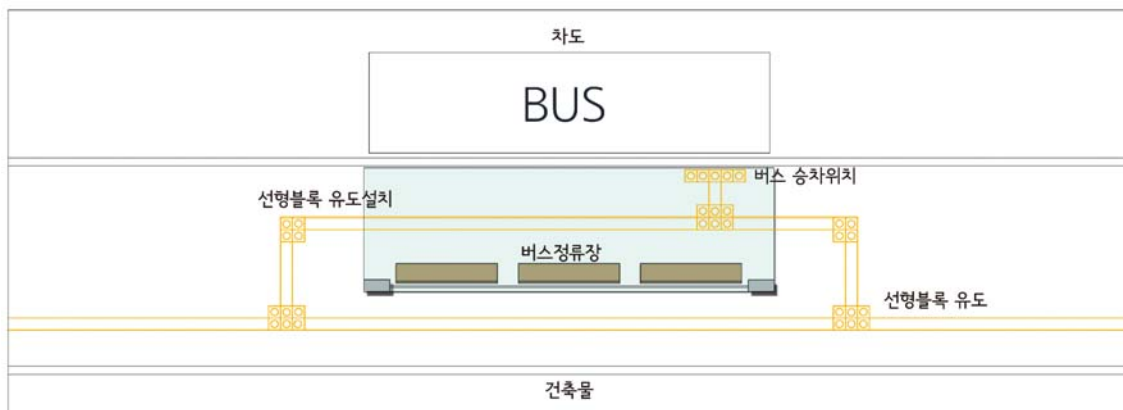
가. 일반지침 - 쾌적한 정류장을 위한 대기공간 조성,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한다.

- (1) 버스정류장 대기 공간 상부에는 캐노피 등 지붕을 설치하여 차양 및 우천시 등의 기후변화에도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 (2) 대기공간이 기존 보도의 보행로와 분리되어 교통약자 등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3) 오랜 시간 대기하기위한 벤치를 설치할 수 있으나,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승하차 동선에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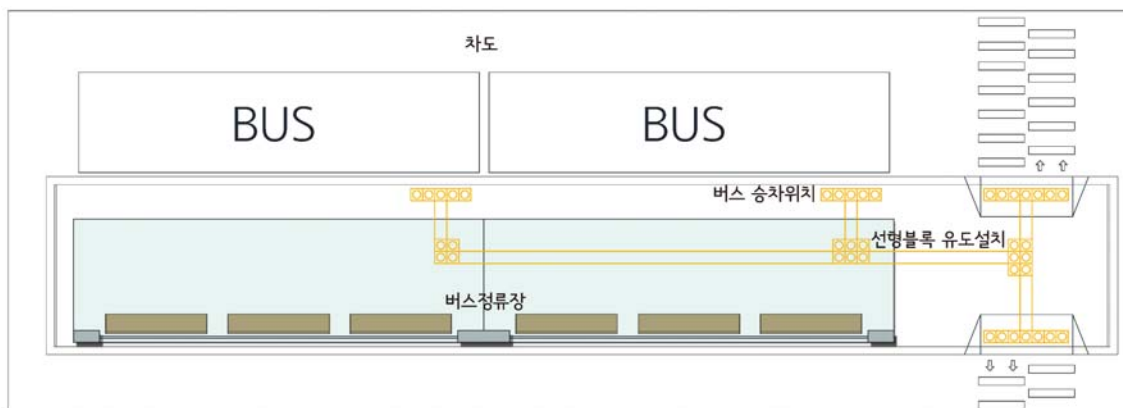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점자블록 설치

- (1) 차도와 면한 대기공간의 버스 승차 부근에는 승차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점형블록은 차도 전면 0.3m에 한 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인근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승차부근의 점형블록까지 유도하여 설치한다.
- (3) 버스중앙차로제와 같이 정류장이 교통섬에 있어 버스가 동시에 여러대 정차할 경우 각 승차 위치마다 점형블록을 한 줄로 설치하며 교통섬의 폭이 넓은 경우는 점형블록과 함께 선형블록을 유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에서 시작하여 연석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고, 교통섬 유효폭이 좁아서 선형블록 설치가 힘든 경우 점형블록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26> 버스정류장 점자블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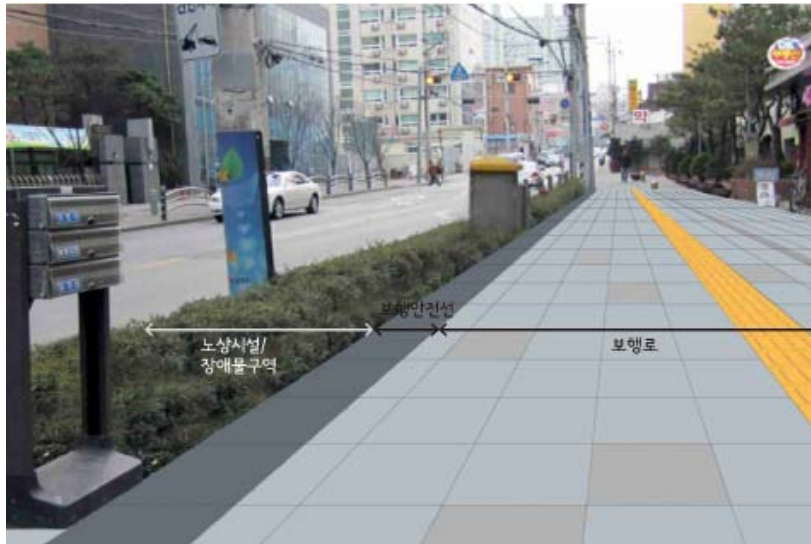
<그림 4-27> 버스정류장 점자블록2

다. 안내시설 설치

- (1)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내에는 행선지·시간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이 읽을 수 있도록 바닥에서 1.5m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이때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3) BIS(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정보시스템)등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m내외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 등 휴대용 기기와 연동되어 버스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타 노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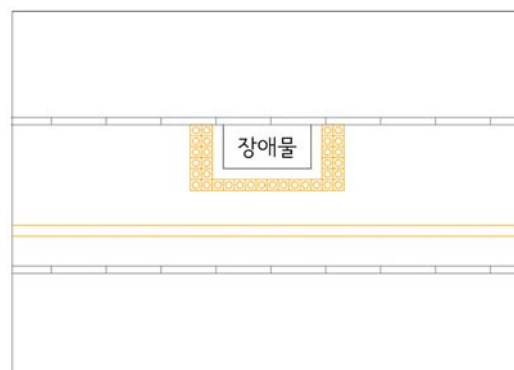
<그림 4-29> 기타 노상시설 사례

가. 보도의 보행동선과 분리

- (1) 버스정류장, 지하철출입구, 육교, 벤치, 지하철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우체통, 가로수, 가로등, 분전반, 소화전, 공중전화박스, 보행자 안내표지판, 기타 도심 키오스크 및 조경시설 등 노상시설 등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동선에서 분리되어 차도 쪽 장애물구역 부근에 체계적으로 설치한다.

나. 점자블록의 설치

- (1) 지하철 환기구 및 지하철출입구 등 자체 폭이 커서 부득이 보행자의 보행동선을 침범한 경우 그 전면과 측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사전에 충돌을 방지토록 한다.



<그림 4-30> 보도 장애물 점자블록

참고문헌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관공서편, 여객시설편, 보도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국토교통부)